

5·18 제35주년 학술대회

5·18의 진실과 민주적 가치의 수호

일시 : 2015년 5월 16일(토) 오후 2~6시

장소 : 5·18기념재단 내 시민사랑방

주최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5·18기념재단

돌아오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그대들의 꽃다운 혼
못다한 사랑 못다한 꿈을 안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부활의 노래로
맑은 사랑의 노래로
정녕 그대들 다시 돌아오는구나
.....

통겨오르는 새날의 태양처럼
황토 땅에 뿌리 뻗는
새봄의 향그런 쭉니파리처럼
맨살로 곳곳이 서 있는 참나무처럼
스스로의 몸을 썩혀 짝을 띄우는
언 땅에 묻혀 겨울을 이겨낸 보리처럼
끝끝내 죽지 않는 뿌리로
빛살 가르며 날아가는 창끝,
과녁을 향해 달려가는 화살로
온천지 가득한 눈부심으로
돌아오는구나,
돌아와 우리들의 가슴을 채우는
빛이 되는구나.....

.....

문병란 「부활의 노래」 중에서

식 순

시 간	내 용
14:00~14:20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상임이사 인사말
	학술대회 개최목적 소개
14:20~15:00	주제 1 : 기억과 왜곡 사이의 5·18 : ‘기억의 형법’을 위한 시론 발표 : 박학모(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 장규원(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5:00~15:15	토론 1
15:15~15:55	주제 2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관리 전략: 기록의 특성에 따른 아카이브 관리 발표 : 이상민(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홍성덕(전주대 교수)
15:55~16:10	토론 2
16:10~16:20	휴식
16:20~17:00	주제 3 : 계엄군의 광주봉쇄 : 북한군 침투는 가능했는가? 발표 : 안길정(5·18재단 전임연구원) 토론 : 노영기(조선대 교수)
17:00~17:15	토론 3
17:15~17:55	종합토론 종합토론 사회 : 이종범(조선대 교수)
17:55	폐회 선언

주요 내용

1. 기억과 왜곡 사이의 5·18 - '기억의 형법'을 위한 시론

발표 :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 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관리 전략: 기록의 특성에 따른 아카이브 관리

발표 : 이상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홍성덕 (전주대 교수)

3. 계엄군의 광주봉쇄: 북한군의 침투는 가능했는가?

발표 : 안길정 (5·18재단 전임연구원)

토론 : 노영기 (조선대 교수)

※ 종합토론 사회 : 이종범 (조선대 교수)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01

기억과 왜곡 사이의 5·18 - '기억의 형법'을 위한 시론

박학모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문제의 제기: 기억의 정치와 형법
2. 유럽의 기억정책과 “부인금지법”
3. 독일형법상 홀로코스트부인금지
4. 5·18왜곡과 기억의 형법의 모색
5. 나가는 말: 기억의 형법 vs. 망각의 형사정책?

01

기억과 왜곡 사이의 5·18 - ‘기억의 형법’을 위한 시론

1. 문제의 제기 : 기억의 정치와 형법

세상이 LTE 속도로 변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강산의 변화에 관한 10년 주기설을 취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 이제 강산이 세 번이 바뀌고 다시 절반의 고개를 넘어가는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 사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 중요성·고유성·대체불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¹⁾ 5·18 민주화운동은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실현을 통해²⁾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5·18 민주화운동 후에 이루어진 한국의 인권 성장은 아시아 인권운동의 모범”이라거나 “5·18 민주화운동은 (동아시아) 인권투쟁에서 영감의 원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³⁾ 5·18 민주화운동은 변혁운동이 전면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부여하고 승리의 방법을 제시하여 87년 6월항쟁의 전

1)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 세 번째 기준에 따르면 5가지 요소(시간, 장소, 사람, 대상/주제 또는 형태/스타일)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에서 유산이 세계적 관점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http://heritage.unesco.or.kr/mow/mow_reg/

2) 5·18광주민중항쟁이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의 본문 참조. http://heritage.unesco.or.kr/mow/mow_ko/

국적 전개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이 빚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신기원의 역사는 값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다. 김준태 시인은 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에서 이 나라의 (민주의) 십자가를 짊어진 골고다 언덕이기를 자처한 5월 광주의 상처와 죽음의 피값으로 이 나라 민주화의 역사가 쓰였음을 노래하였다.⁵⁾ 같은 시에서 시인은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 아아 우리들의 피와 살덩이를 /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여 /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이여”. 35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읽는 이 시가 마치 멈춰진 세월을 앞에 두고 들려오는 것처럼, 아니 35년을 그렇게 속절없이 불어온 바람처럼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안타까움일까?

시는 이렇게 이어진다. “아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항쟁의 현장 광주의 동시대 시민들에게 숙명이 된 탄식이라 할 수 있다. 고3 때 광주 민주항쟁을 몸소 겪은 강용주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은 2012년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광주항쟁을 겪은 그 순간 ‘내 영혼에 금이 가버렸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18살짜리 고3이 그 이후의 생을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내 영혼이 쟁하고 금가는 소리를 들은 그때에 갇혀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그때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⁶⁾

여기서 우리는 35년전 사건이요 항쟁이요 운동으로서의 5·18, 그리고 시간과 기억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김준태 시인의 시를 좀 더 들어보기로 하자.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 백의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 이나라의 하느님 아들이여 (...) 광주여 무등산이여 / 아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 꿈이여 십자가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갈 청춘의 도시여”.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 죽음을 넘어 불사조와 같이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며 꿈이며 십자가로서 세월과 함께 더욱 젊어가는 청춘으로서의 광주 그리고 5·18의 기억이 하나의 이상으로 상징할 수 있다면, 영혼의 커다란 금과 같이 지울 수 없는 악몽 같은 기억으

4) 이해찬·유시민 외, 기억하는 자의 광주, 개정증보판, 돌베개, 2010, 482쪽 이하 참조.

5) “항쟁 10일 동안 광주와 주변 지역에서 165명의 시민이 사망하였다. 76명이 실종되었고, 3,383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476명이 체포되는 등 총 5,100명이 연루되었다. 뿐만 아니라 102명은 포위 당시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앞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647>

로 여전히 남아 있는 피해자의 현실은 치유와 회복의 정의의 실현의 과정 또는 중단·지연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가 관철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다른 과거사 처리사례에 비하여 5·18 과거청산작업은 유례없는 “모범”사례로 성공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른바 “광주의 방식”으로 지칭되며 제기되는 비판점들은 오늘 현재 “5·18”이 처해 있는 기억의 위기에도 무관하지 않은 만큼 관계당사자들도 이를 자기비판적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포함하여 수천 명에 이르는 시민의 직간접적 희생의 대가로 한국 민주화의 역사를 쓴 5·18 민주화운동이 한 때는 국민의 것으로 확장되었다가 항쟁정신의 박제화과정에서 광주사람들만의 것으로 위축되어 급기야 누구의 것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고 한국 민주개혁의 상징에 상응하는 정도로 한국의 지속적인 사회민주화에 기여하지는 못하였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⁷⁾

그러나 이러한 패착에 대한 질책은 “죄인처럼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종교적 수준의 책임추궁일 수는 없으며, 항쟁기록의 세계유산화에 앞서 이루어졌어야 할 항쟁정신의 국민적 공유와 국가유산화를 위한 성찰과 책임 및 역량의 강화를 촉구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속절없는 세월”이 허용되는 시간들 속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의 왜곡은 매우 악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5·18민주화운동왜곡의 기원을 연구한 오승용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면서도 난해한 상황, 다시 말해서 “복잡·위험·난해”라는 세 단어로 함축하여 스케치하고 있다.⁸⁾ 여기에 또 하나의 수식어를 더하자면 아이러니와 역설이 아닐까 생각된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그 전환기를 맞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면, 그 자유가 5·18 왜곡과 파괴를 향해 있고 이것이 용납되는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가히 아이러니와 역설을 넘는 언어도단의 현주소라 할 것이다.

앤서니 챔프는 과거를 짐으로 바라보는 문화는 역사를 단절과 망각과 경멸로 대하기 때문에 반역사적이며, 결국 역사의 비인간화와 기억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반면 역사를 사회적 기억으로 유지하는 문화에서 역사는 사회적 기억의 논리적 귀결을 최

7)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재승, 국가범죄, 도서출판 앨피, 2010, 592쪽 이하 참조.

8)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오승용,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기원과 쟁점,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2013, 3쪽 이하 참조.

대한 따르게 하는 기능을 한다.⁹⁾

허버트 허시에 따르면 역사와 시간을 대하는 단절적 패러다임만이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무엇보다 정치권력에 기여하도록 조작되며, 기억을 조작하는 능력은 그 자체로 권력의 수단이 된다.¹⁰⁾ 제노사이드 연구자인 그가 그 대표적 사례로서 논증한 바와 같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기억의 조작을 통한 정치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준비되고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저 스미스는 심지어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에게 그에 앞서 1915-17년에 발생한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과정과 그에 대한 세계의 무관심이 홀로코스트를 위한 학습모델이 되었다고 본다. 제노사이드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부정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기억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¹¹⁾ 뉘른베르크 법정의 미국측 수석검사였던 텔퍼드 테일러는 미국의 베트남전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화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뉘른베르크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훈을 배우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오늘날의 미국의 비극이다.”¹²⁾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승화시켜야 할 유산은 존재하지 않는다.”¹³⁾는 것은 자명한 역사의 교훈이며, 심지어 사물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다. 이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기억의 왜곡이라 할 수 있다. 그 기억의 왜곡이 개별적 범죄가 아닌 제노사이드와 같은 국가범죄에 관한 기억에 관계된 사안이라면 이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임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특히 국가범죄로서의 제노사이드 그 자체가 아닌, 말하자면 그 범죄의 기억에 관한 문제에 형사정책, 나아가 형법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국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듯이 형법은 곧 국가형법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곧 국가공권력의 행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선다. 법치국가적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제력 행사 중에서도 개인의 인격권에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는 수단이 형법적 수단, 일반적으로 형벌로 통칭되는 형사제재¹⁴⁾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법

9) 허버트 허시/강성현(역),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책세상, 2009, 47쪽 이하에서 재인용.

10) 허시, 앞의 책, 49쪽 이하.

11) 허시, 앞의 책, 131쪽에서 재인용.

12) Telford Taylor, Nuremberg and Vietnam: An American Tragedy, 1970, 207쪽(허시, 앞의 책, 125쪽에서 재인용).

13) 이해찬·유시민 외, 앞의 책, 487쪽.

14) 여기서 형사제재란 범죄자의 죄책(책임)의 토대 위에서 부과되는 사형, 징역형(자유형), 벌금형 등 ‘형벌’과 범죄자의 미래적 위험성 때문에 부과되는 ‘보안처분’(치료감호, 전자감독, 보호관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은 법치국가 ‘최후의 수단’으로 칭해지며, 이를 형법의 보충성원칙이라 부른다.¹⁵⁾ 이를 다 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행위를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회통제에 형법을 투입 하는 데에는 보다 엄격한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와 같은 법적 이익, 즉 ‘법익’의 보호를 위해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의 법익(생명 형으로서의 사형, 자유형으로서의 징역, 재산형으로서의 벌금 등)에 개입하는 형사제재 는 리스트가 표현한 대로 ‘법익의 침해를 통한 법익의 보호’이기 때문에 양날의 칼과 같고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사회통제수단이다. ‘보호법익’의 실체가 없거나, 설사 있다하더라도 균형을 잃은 형법의 투입은 곧바로 국가형벌‘권력’에서 국가형벌‘폭력’으로 전락하고 만 다.¹⁶⁾

사실 우리가 국가에 대해 던질 수 있는 매우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선뜻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질문, “국가의 이름으로 제노사이드를 자행할 수도 있는 국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불법청산의 과제조차 버겁게 그리고 미온적으로 감당해내는 국가에 과연 제노 사이드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신뢰성 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에 가 까운 질문이 이러한 “형법소극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정책의 현실적 구 현에 대한 기대가능성 여부는 일단 이차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국가”범죄 로서 제노사이드의 기억의 문제는 사전·사후 할 것 없이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는 국가가 관여된 국가적 사안임에 틀림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베트남 비극”,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왜곡된 국가적 기억의 정치로부터 비롯된 역사적 비극이자 야만이였다.

이러한 교훈들은 올바른 기억의 정치와 기억의 법을 위한 책무로부터 국가가 손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정치와 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은 한편으로는 정치의 산물이지만, 일단 형성된 법은 다시 정치와 정책을 구속한다. 요컨대 기억의 정치 가 빚어내는 형사정책적 고려는 무엇이며, 그러한 형사정책은 어떻게 형법의 틀 속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숙고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기억의 형법”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이른바 “부인주의”에 대 한 형사정책적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15) 이른바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위험형법론’에서는 구체적 ‘법익’ 보호를 지향하는 형법의 보충성 이나 최후수단성이 다투어지기도 한다. 후기현대사회에 대두된 위험과 결부된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형 법의 전진배치와 선제적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법치국가적 형법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의미를 부여받 지는 못하고 있다.

16) 민주화과정은 곧 국가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으며, 우리 현실에서 이것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 라는 점은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아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2. 유럽의 기억정책과 “부인금지법”

가. “기억과의 전쟁”으로서 부인주의 범죄

이른바 ‘부인주의’(Negationism, Negationnisme, Negationismus)는 “역사적 사실의 공개적 부인”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일반적으로 “집단살해의 부인”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역사학의 ‘수정주의’와의 차별화를 위해 채용된 개념이다. 대외적으로 역사가인양 학문과 연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나치이데올로기의 복원을 정치적 목표로 지향하는 “사이비 수정주의자”들의 실체는 부인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¹⁷⁾

전후에 비로소 부인주의가 등장하여 이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며, 부인주의의 원조는 홀로코스트 범죄자인 나치이었다. 부인주의는 홀로코스트정책, 즉 유대말살정책에 내재된 본질적 구성요소였다. 이는 홀로코스트 과정에서의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범죄증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완성은 범죄기억까지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억과의 전쟁”(기억말살전)¹⁸⁾의 차원에서 나치는 홀로코스트 과정의 의사소통에서 이를 미화하는 은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히틀러 자신부터 용어사용규칙에 철저히 예컨대 유대인 이주나 특별처우와 같은 용어만을 사용하였다.¹⁹⁾ 학자들은 이에 대해 물리적 말살에 심리적 말살이 더해진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제노사이드와 대비하여 “메모리사이드”, 즉 기억살인(Memorizid, Mneozid)이라고도 표현한다.²⁰⁾ 전후에 나타난 부인주의자들은 사실은 나치에 의해 시작된 기억살인의 유산을 상속한 것이다.

나. 유럽연합 기억정책의 산물 “부인금지법”(부인금지 기본결정)

집단살해를 넘어 기억살인으로 자신들의 범죄의 흔적마저 지우려한 나치의 교묘하고 집요한 홀로코스트부인의 전통은 단죄는 되었을지언정 멸절되기는커녕 단절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전후에는 그 추종자들에 의해 유산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부인주의자들에 의해 홀로코스트부인과 왜곡이 기억살인을 위한 기억말살전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데 대하여 유럽의 제 국가들과 시민사회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부인주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 대응은 홀로코스트라는 대재앙의 역사가 남긴 확실한

17) 독일의 “홀로코스트부인”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개념으로, 1987년 유대계 프랑스 사학자 루소(Henry Rousso)에 의해 채택된 후 사학계에 수용되고 특히 프랑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Milosz Matuschek, Erinnerungsstrafrecht, Berlin, 2012, 33쪽 이하 참조).

18) 국내에서 이를 테마화한 저서로는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세계절출판사, 2013.

19) 광주항쟁에서 최초의 발표명령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듯이,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명령하였다는 공식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Matuschek, 앞의 책, 36쪽 이하)

20) Aleida Assmann, Erinnerungsraume, 336쪽(Matuschek, 앞의 책, 38쪽에서 재인용).

교훈, 그리고 엄중한 정치적 책임의식에서 비롯된다.²¹⁾ 특히 1990년대 이후 독일과 유럽에서 네오나치가 발호하여 공공연히 홀로코스트부인을 일삼아 이것이 유럽의 집단지성에 큰 도전이 되면서, 개별국가는 물론 유럽연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²²⁾

유럽연합은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를 유럽연합공동체의 규범적 토대인 인권과 기본권 존중 원칙, 그리고 자유민주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간주하고, 같은 차원에서 부인주의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로 대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조치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²³⁾ 회원국의 문화적, 법적 전통의 차이로 인해 형법적 대응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언급하는 「기본결정」은 특히 심각한 유형의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 행위에 대해서 만이라도 최소한의 공통적 제재규범을 설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인 유럽연합의 기본결정 제안이유이다.²⁴⁾ 이 기본결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부인주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용어 그대로 “기본결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결정을 도출하게 된 배경과 그 규정방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혐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1996년 7월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에 대한 공동대책」(Joint Action 96/443)을 의결하였다. 이것이 유럽연합차원의 공동대응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하여 원만한 사법공조를 도모하고 인종주의적 혐오선동 및 홀로코스트부인에 대한 회원국 간 처벌규정의 조화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그 결

21) 집단적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는 과거를 겨냥한 법적 책임의 차원을 넘어 '구조적 부정의'에 주목하면서 미래지향적 책임의 공유와 집단행동에 의한 면책을 주장한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해서는 아이리스 M. 영/허라금·김양희·천수정(역),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도서출판 이후, 2013, 184쪽 이하 참조.

22) 1949년에 설립된 '유럽평의회'(Europarat, Council of Europe)는 범유럽 국제기구로서 협약국가들의 '유럽인권협약'(EMRK, ECHR) 준수여부를 감독·통제하기 위해 산하에 '유럽인권재판소'(EGMR, ECtHR)를 두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2003년 1월 28일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협약 추가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제6조에 집단살해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부인, 현저한 무해화, 승인 및 정당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방식은 기본결정과 비슷하나 유보조항이 많은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89.htm>

23)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초국가적 “홀로코스트기억정책” 프로그램 및 유럽연합기구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Elisabeth Kubler, Europäische Erinnerungspolitik, Der Europarat und die Erinnerung an den Holocaust, transkript: Bielefeld, 2012, 63쪽 이하 참조.

24) 기본결정 제안이유 제(6)항, L 328/55 (6).

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01년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선동행위와 제노사이드 부인 행위 등의 형사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기본결정」(Rahmenbeschluss, framework decision)²⁵⁾ 초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법전통과 법체계의 차이로 인해 쉽게 논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²⁶⁾ 무려 7년의 논의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독일이 유럽연합이사회 의장국을 하면서 마침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2008년 12월 6일부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의 형법적 규제를 위한 이사회 기본결정 2008/913」²⁷⁾(이하 「기본결정 2008/913」이라 약칭!)이 발효되었다.²⁸⁾

「기본결정 2008/913」의 핵심조항 제1조 제1항은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 범죄’라는 제하에 총 4호에 걸쳐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폭력 또는 증오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행위(a호; b호는 a호의 폭력·증오 선동행위를 문서, 도화 및 그 밖의 자료를 공공연히 전파 또는 배포를 통해 범한 경우),

둘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 7, 8조²⁹⁾의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를 공공연히 승인하거나, 부인 또는 현저히 무해화(사소화)하는 행위(c호; d호는 1945년 8월 8일 런던협약 부록 국제군사재판소헌장 제6조의 반평화범죄,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대상: ‘홀로코스트 부인’이 이에 해당!). 이 둘째 범주, 즉 제1조 제1항 c, d호가 이른바 ‘부인금지조항’ 또는 ‘부인주의 처벌조항’이라 할 수 있다.

25) 유럽연합의 법체계상 기본결정은 지침(Richtlinie, directive)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회원국 국내법에 의한 입법을 강제하는 효력을 지닌다. 회원국이 국내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적용될 수도 있다.

26) 일부국가의 경우 형사처벌하려는 행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또 다른 일부국가는 너무 좁게 잡으려 하여 합의가 지연되었다. 예컨대 폴란드를 비롯한 구 동구권국가들은 공산체제범죄부인까지 형사처벌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참고로 폴란드와 체코는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공산체제하에 자행된 집단학살부인을 홀로코스트부인과 함께 형사처벌하고 있다.

27)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13/JHA of 28 November 2008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DE/TXT/?qid=1430951239680&uri=CELEX:32008F0913>

28) 유럽연합회원국들은 2010년 11월 28일까지 이 기본결정에 상응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한 후 이를 유럽연합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2013년 11월 28일까지 회원국들이 이 기본결정에 상응하는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였다(기본결정 2008/913 제10조).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14년 1월 27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이행현황을 보고하였다(COM/2014/027 final):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DE/TXT/?qid=1430957601526&uri=CELEX:52014DC0027>

29) 우리나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 제8, 9, 10조에 상응하는 규정(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여기서 유럽연합 기본결정은 ‘부인금지조항’을 일반규정인 ‘국제형법범죄’의 부인금지³⁰⁾(일반 제노사이드 부인금지, c호)와 특별규정인 ‘홀로코스트 부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결정의 규정은 유럽 개별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부인금지규정을 입법해 온 기존의 방식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제노사이드부인의 형사처벌 필요성에 대한 유럽연합회원국 공통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³¹⁾

기본결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부인금지조항’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의행위만이 처벌대상이 되며(제1조 제1항 본문), 부인주의적 행위를 방조 또는 사주하는 공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기본결정 제2조).

② 공공연한 승인이나 부인 또는 현저히 무해화하는 행위³²⁾가 특정그룹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를 부추길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제1조 제1항 c, d호 후단).

③ 행위양태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인주의적 행위가 “공공질서의 침해” 여부 또는 “위협, 욕설, 모욕의 형태”로 자행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으로 한다(제2항).³³⁾

④ 피해자인 특정그룹의 기준과 관련하여 c, d 각 호의 “인종, 피부, 종교, 출신, 국가·민족적 유래” 기준 이외에도 그 밖의 기준(예컨대, 사회적 지위, 정치적 확신 등)을 채택할 수도 있다(제안이유 제10항).

⑤ 법률효과로서 “효과적이고 적정하며 예방적인” 형사제재가 부과되어야 하며, 법정형은 최소한 1년에서 3년으로 규정해야 한다(제3조).³⁴⁾

⑥ 자국 내에서 행해진 범죄의 경우 적어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피해자의 의사(고발 또는 공소제기)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제5조).³⁵⁾

30) 국제형사재판소법에 규정된 범죄의 부인.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국제형법전(VStGB: Volkerstrafgesetzbuch)이라 칭한다.

31) Claudia Bernhard, Das Rechtsguter-Trilemma, 2011, 35쪽.

32) 이하에서 “부인주의적 행위” 또는 “부인금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승인, 부인, 무해화”, 이 세 가지를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33) 나아가 ‘부인 또는 현저한 무해화’의 요건과 관련하여 그 범죄의 최종적 확정이 회원국 법원이나 국제재판소 어느 하나에 의하면 족한 것인지, 양자 모두에 의해 확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오로지 국제재판소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항).

34) 증오선동(증오설교, Hate Speech)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럽연합회원국에서는 기본결정의 권고와 같이 1-3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최고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인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1년에서 최고 20년형(오스트리아)까지 규정되고 있다. 대부분 자유형과 함께 선택적으로 벌금형 등의 대체제제도 규정하고 있다.

35) 대부분의 유럽연합회원국은 이를 이른바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직권소추에 따르고 있다.

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부인금지법” 입법현황

2014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의 부인금지법 입법현황에 관한 보고³⁶⁾에 따르면 회원국별로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국제형법범죄의 부인금지조항(기본결정 제1조 제1항 c호)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입법현황은 다음과 같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의 경우 부인주의 행위의 세 가지 유형, 즉 “승인, 부인, 무해화”를 모두 형사처벌하며, 「기본결정」과 비슷한 구조의 형법규정을 두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러한 부인주의적 행위는 특정그룹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협박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는 승인행위만을 처벌하며, 포르투갈은 부인행위만을, 그리고 라트비아와 루마니아는 승인 및 부인행위를 처벌한다. 라트비아와 포르투갈은 모든 국제형법범죄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루마니아는 집단살해 및 반인도범죄를 대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집단살해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인주의적 행위를 폭력 또는 중오를 부추길 개연성과 결부시켜 규정하는지 여부의 조사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의 경우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반면, 불가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의 경우는 상당한 개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13개 유럽연합회원국(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헝가리,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은 일반 국제형법범죄 관련 부인금지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독일과 네델란드는 판례에 의해 홀로코스트 부인금지조항이 국제형법범죄에 대해서도 준용된다는 입장이다.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홀로코스트부인금지조항((기본결정 제1조 제1항 d호)의 입법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프랑스,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는 기본결정처럼 국제군사재판소 헌장(런던협약)의 규정을 명시하며 부인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벨기에, 체

36)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DE/TXT/?qid=1430957601526&uri=CELEX:52014DC0027>

코, 독일, 리투아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나치범죄를 직접 언급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형태의 부인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각국이 약간씩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루마니아와 슬로베니아는 홀로코스트의 승인, 부인, 무해화, 세 유형 모두를 금지하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자국 및 자국민에 대해 행해진 나치범죄의 부인금지만을 규정한다.

나머지 15개 국가(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델란드, 말타,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는 특별규정 형태의 홀로코스트부인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네델란드, 핀란드, 영국의 경우 증오를 교사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 형법규정을 적용하여 홀로코스트 부인행위를 처벌한 판례가 존재한다.

부인금지조항을 입법하면서 부인주의적 행위에 추가적으로 이로 인한 “공공질서 침해” 또는 “위협, 욕설, 모욕 형태”의 범행(제2항: 회원국의 입법재량사항!) 요건으로 규정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부인주의의 처벌을 어렵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요건을 채택한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³⁷⁾ 부인주의적 행위가 “폭력 또는 증오를 부추길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유럽인권재판소(EGMR) 판결에 따르면 반인도범죄(홀로코스트) 부인행위는 유대인에 대한 모욕과 증오를 부추기는 특히 심각한 형태에 해당한다.³⁸⁾ 또 홀로코스트와 같이 명백히 확인된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나 수정주의적 서술은 유럽인권협약 제17조(권리남용금지)에 따라 무조건 ‘표현의 자유’(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보호에서 배제된다고 본다.³⁹⁾

37) 헝가리의 경우 규정에 없지만 판례가 독일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부인행위가 “공공의 평안(질서)을 해치기에 적합한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38) *Garaudy v. Frankreich*, 65831/01, 24 June 2003 ECtHR: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23829>

39) *Lehideux & Isorni v. Frankreich*, (55/1997/839/1045), 23 September 1998 ECtHR: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58245>

라. “부인금지법”의 실효적 관철을 위한 고려사항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2014년 기본결정이행현황보고서가 도출한 개선사항에 따르면, 국제형법범죄 선동행위나 부인주의적 범죄행위의 형사소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특수부) 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해 상세한 수사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법규정 숙지를 위한 특별교육·연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범죄의 숨은 범죄(암수범죄)가 많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범죄를 신뢰성 있게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업무협력, 나아가 국가간 사법공조도 촉진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정부기관과 정당과 시민사회가 공히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행위(선동 및 부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범죄로 선언하는 것이 이러한 범죄행위의 심각성과 함께 제재의 심각성을 인정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3. 독일형법상 홀로코스트부인금지

가. 개인적 모욕죄 vs. 사회적 공공질서(평온)침해죄

유대인에 대한 나치학살범죄를 부인하거나 무해화하는 역사왜곡적 홀로코스트부인행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아우슈비츠거짓말”(Auschwitzlüge)에 대해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독립된 처벌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형법 제130조의 국민선동죄는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가 동시에 “인간존엄”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학살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해 국가공동체 내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의 생명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로 대우하는 경우에만 “인간존엄”의 침해를 인정한 관계로 홀로코스트부인만으로 유대인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판례는 홀로코스트부인에 대해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 개인에 대한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모욕죄를 인정하여 처벌하였다. 연방대법원(BGH)은 유대인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직접 핍박을 체험한 개인적 운명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 체험 또는 출생 여부와 무관하게 독일에 사는 모든 유대인의 인격에 부담이 되었다는 역사적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모욕죄가 친고죄인 관계로 홀로코스트 피해자가 홀로코스트 부인행위 때문에 모욕죄를 이유로 직접 고소하게 만드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혹한 고난을 몸소 체험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명해 보이게 하고, 심지어 형식적 소추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피해자가 모욕을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⁴⁰⁾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1985년 일차적으로 취해진 입법조치는 홀로코스트부인행위로 인한 모욕죄 입건의 경우 친고죄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홀로코스트부인행위에 대해 직권소추를 하되,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구성하였다.⁴¹⁾

이러한 홀로코스트부인행위를 둘러싼 입법정책적 공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를 더 이상 개인적 범익인 모욕죄의 차원이 아니라 초개인적, 즉 사회적 범익인 공공질서에 대한 범죄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되며⁴²⁾ 이를 전제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⁴³⁾ 1994년 10월 28일 중범죄대책법(Verbrechensbekämpfungsgesetz)을 통해 현행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에 독립적인 홀로코스트부인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이 신설되면서 특정집단에 대한 폭력·중오선동행위로 처벌하는 경우(제130조 제1항)에도 “인간존엄의 침해” 요건을 “공공평온의 침해”로 대체하였다. 학설에 따르면 이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행위를 통해 공공의 평온이 이미 침해되었다는 ‘결과’를 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구체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위험’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데는 그 행위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우려가 존재하면 족하다.⁴⁴⁾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신설로 홀로코스트부인행위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선동죄로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⁴⁵⁾

나. 홀로코스트부인금지 vs. 표현의 자유?

홀로코스트나 그 밖의 제노사이드를 정당화하며 승인(justification/billigen)하거나 그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negation/leugnen), 또는 평가 절하하여 사소화·무해화(trivialization/verharmlosen)하는 부인주의적 표현을 형벌로써 금지하는 정책은 현대법치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주지하

40) Klaus Vogelgesang, Die Neuregelung zur sog. “Auschwitzlüge”, NJW 1985, 2386 이하.

41) 독일형법 제194조 제1항 제2, 3문.

42) Stefan Huster, Das Verbot der “Auschwitzlüge”, die Meinungsfreiheit und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JW 1996, 487 이하.

43) BR-Dr 382/82; BT-Dr 9/2090; 10/891; 10/1286.

44) Thomas Fischer, Strafgesetzbuch(StGB), § 130 Rn. 2, 2a, 13, 32.

45) 2005년에는 「집회법 및 형법 개정법률」로 제130조 제4항에 ‘나치체제 찬양죄’가 신설·삽입되었다.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피해자의 존엄을 해하는 방식으로 나치폭력·자의지배를 승인, 찬양 또는 정당화함으로써 공공의 평안을 침해하는 자” 역시 홀로코스트부인범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는 바와 같이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홀로코스트 부인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이를 처벌하여 근본적인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 여부를 둘러싼 헌법적 규율과 그 해석·적용상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입장차이이지만 유럽의 제 국가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차이들이 존재하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이 홀로코스트부인문제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으로 방관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전후 세대들이 전쟁과 학살의 기억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우주의적 사고에 노출되며 이에 뒤따르는 범유럽적 위기상황과 병폐가 단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고민과 우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독일기본법(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며, 아울러 제2항에서 일반법률 등에 의한 제한의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홀로코스트부인은 이미 입증된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의견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아예 기본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⁴⁶⁾ 유럽인권협약의 위반여부를 심사하는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나치정책의 정당화는 물론 홀로코스트와 같은 카테고리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화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의사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⁷⁾

다. 사회적 가치로서의 집단기억

독일에서는 최근 홀로코스트부인금지의 정당화 근거는 기존의 형법적 법익론의 카테고리 너머에서 찾아야 한다고 견해들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홀로코스트부인금지는 “정치적 합의를 토대로 한 독일인의 전후정체성”의 표현이며, 따라서 명예나 공공안녕이 아닌 희생자의 정체성과 독일의 정체성에서 이 규정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홀로코스트와 그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의미에서 “역사적 진실” 또는 “자행된 범죄에 대한 수치심”이 홀로코스트부인금지의 보호이익이라는 견해가

46) BVerfGE 90, 241.

47) EGMR NJW 2004, 3691 (65831/01 Garaudy/Frankreich).

제기되기도 한다.⁴⁸⁾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바쉬(Maurice Halbwachs)의 ‘집단기억이론’⁴⁹⁾에 따르면 집단기억과 정체성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억연구에 힘입어 프랑스에서 ‘부인주의’는 ‘홀로코스트기억의 침해’라는 관점에 1990년에 입법된 프랑스의 홀로코스트부인금지법(이른바 ‘가소법’, Loi Gayssot)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가소법에 의해 개정된 프랑스 언론법 제24조의2 홀로코스트부인금지규정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통일적이지는 않지만 “기억의 보존”, “기억의 방어”, 심지어 “역사적 진실의 보존” 등 (집단)기억과의 맥락에서 고찰함으로써 기억을 확고한 법률적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집단기억은 하나의 사회적 가치로서 사회는 긍정적 측면에서는 그 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부정적 측면에서는 범규범을 통해 안정시켜야 하는 가치라는 것이다.⁵⁰⁾

공통의 관심과 연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부인금지라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프랑스와 독일만 보더라도 각 나라의 학계와 사법이 서로 상이한 정당화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점은 사안에 대한 접근하는 각 나라의 입장 차이가 투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5·18 왜곡과 기억의 형법의 모색

가. 반인도범죄 차원의 5·18민주화운동 : 부인·왜곡 vs. 희생자의 명예

김인석 교수는 1995년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처분을 비판하며 “5·18 양민학살은 광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문제이며, 아울러 전세계의 보편적 양심의 문제로서, 인류의 경험으로 뉘른베르크 전범 및 유대인 학살자 재판과 5·18 학살자 기소 문제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함을 주장한 바 있다.⁵¹⁾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권오곤 상임재판관은 “당시 군부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내지 공격을 왜 인도에 반한 죄

48) 이에 대해서는 Milosz Matuschek, *Erinnerungsstrafrecht*, 2012, 93쪽 이하.

49) 그의 집단기억론에 따르면 개인은 불가불 사회 내 존재로서 개인의 기억은 사회가 만들어주는 기억이라고 본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기억들을 고정시키고 재발견하려는 노력을 하며 이 관계 속에서만 회상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기억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의사소통의 내용이 되고 집단적 기억의 테두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만이 기억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사회는 기억을 생성시켜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집단기억과 정체성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자세한 소개는 5·18의 문화적 기억을 위한 연구, 2011, 20쪽 이하 참조).

50) Milosz Matuschek, *Erinnerungsstrafrecht*, 2012, 95쪽 이하. 여기서 기억이 초개인적 가치라는 점은 사적인 표현이 아닌 공공연한 표현만이 처벌된다는 점을 통해서 드러난다.

51) 김인석, 나치의 유대인 학살자 재판과 5·18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 1995, 213쪽 참조.

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일정한 군부의 정책 내지 방향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공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면 전형적인 인도에 반한 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찾을 수 있었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처벌도 논의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인석 교수나 권오곤 상임재판관이 판단한 바와 같이, 국가범죄로서 그 사이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로 단죄된 5·18민주화운동과정의 집단살해는 런던협약이나 국제형사재판소법(로마규정)상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공공연한 부인주의 행태는 희생자(피해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차원에서 현행 형법의 친고죄 규정(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을 바꾸어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경이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직권소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의사불벌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소고발권 행사를 포함하여 적극적 소송참여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참가제도 및 피해자변호인 제도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인정과 연대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적 법익의 침해로서의 5·18민주화운동 부인·왜곡

근대자유주의형법의 아버지이자 사형폐지주창자인 계몽법학자 베카리아(Cesare Beccaria)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회에 끼친 해악」만이 범죄의 유일한 기준이며 척도⁵²⁾임을 역설한 이래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현대형법학은 어떠한 행위를 범죄화하고 형벌을 부과하려 할 때 이른바 “법익론”의 토대위에서 끈질기게 그 “보호법익”의 실체를 추궁한다. 그 규정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익이나 가치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호법익의 구체화를 통해 보호목적이 설정되면 이를 위해 선택된 보호방식(수단)에 대해서 헌법적 비례원칙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고, 파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총을 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형법은 모든 사회통제수단 가운데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이 다시 상기되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의 홀로코스트부인금지·처벌규정은 ‘국민선동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법익논란 또는 흠결에 대한 지적 때문에 애당초의 “인간존엄의 침해” 요건을 “공공의 평안의 침해”로 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평

52) 베카리아/한인섭(역),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13, 32쪽 이하.

안” 역시 그 고도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늘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홀로코스트부인과 같은 집단학살의 부인이나 그 사실에 대한 왜곡은 결국 집단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침해와 훼손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금지는 “정체성과 결부된 사회적 가치상태로서 (5·18의 경우 민주화운동공동체의) 집단희생에 대한 기억”⁵³⁾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할 것이다. 결국 부인금지와 처벌의 입법은 집단학살의 댓가를 치르며 생성되고 쟁취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의 기억⁵⁴⁾이 부인·왜곡으로부터 형법에 의해 보호될 가치 여부가 달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법익으로서의 집단기억은 사회적 (가치)상태의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진실의무를 추궁하여 거짓말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며, 행위자의 심정과 동기여부를 캐내어 처벌하는 심정형법적 도구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지만원씨와 그 심정적 동조자들의 행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부인·왜곡행태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완화·해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없고, 부인주의자들 나름의 “부인·왜곡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수단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5. 나가는 말: 기억의 형법 vs. 망각의 형사정책?

독일 근대형법학자 리스트(Franz von 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함으로써 형법의 영역에서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파한 바 있다. 쉽게 얘기하면 형사정책적 고려가 형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형법의 틀 내에서 형사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명제와 원칙이 공허함을 넘어 형해화될 때가 많다. 예컨대 “부인·왜곡금지”를 형법적으로 규정하더라도 형사소추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나아가 사법부가 이른바 솜방망이처벌을 일삼을 경우 해당조항이 사문화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법집행행태가 오히려 보호법익의 희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며,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가 과연 기우에 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자칫 기억의 형법이 망각의 형사정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⁵⁵⁾

53) 그동안 이루어진 5·18기억 연구에 대한 개관으로는 장희정, 5·18의 문화적 기억을 위한 연구. -“옛 도청 별관”담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쪽 이하.

54) 김동춘 교수는 기억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공유된 기억이 정신의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고 한 바 있다(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세계절출판사, 2013, 127쪽).

55)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승 교수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 금지반대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초석으로서 갖고 있는 중대성을 주목한다면 역사부인행위의 처벌법을 반대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역사왜곡과 부인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실제로 역사의 부인을 정밀하게 타격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위축시키고, 비판적 역사관을 지닌 소수파들만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가 크다.”(이재승, 홀로코스트 부인, 2013, 84쪽).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다 감거나 두 눈을 다 뜨고 정의의 저울, 정의의 검을 들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부인·왜곡을 처벌하는 기억의 형법을 창출해 내는 단초도, 지켜내는 힘도 결국은 5·18민주화운동의 기억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 권오곤, 공법과 형사법 접점에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의 시사점, 사법정책연구원 외 2014 공동학술대회, 「공법과 형사법의 접점」 발표자료집, 2014.
- 김동춘, 전쟁정치; 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 도서출판 길, 2013.
- 김동춘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4.
-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출판사, 2013.
- 김인석, 나치의 유대인 학살자 재판과 5·18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 박은정·한인섭(편),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김지방, 적과 함께 사는 법, 이야기나무, 2013.
- 로버트 프리먼 버츠/김해성(역), 민주시민의 도덕,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206, 나남, 2007.
- 베카리아/한인섭(역),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13.
- 아이리스 M. 영/허라금·김양희·천수정(역),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도서출판 이후, 2013.
- 알라이다 아스만/변학수·채연숙(역),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출판사, 2011.
- 엘리자베스 영-브뤼/홍원표(역), 한나 아렌트 전기:세계사랑을 위하여, 인간사랑, 2007.
- 엘리자베스 콜(편)/김원중(역),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육,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24,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오승용(편),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2.
- 이재승, 국가범죄, 도서출판 엘피, 2010.
- 이재승, 홀로코스트 부인,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학술토론회 자료집, 5·18기념재단, 2013.
-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편/서각수·신동규(역), 세계의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16,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3.
- 장희정, 5·18의 문화적 기억을 위한 연구. -“옛 도청 별관”담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카를 야스퍼스/이재승(역),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도서출판 엘피, 2014.
-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김유동(역), 계몽의 변증법: 철학적 단상, 우리시대의 고전 12, 문학과지성사, 2013.
-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도서출판 한울, 1998.
- 허버트 허시/강성현(역),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책세상, 2009.
- 5·18기념재단(편), 5·18과 민주시민교육, 5·18기념재단, 2010.
- 5·18 30년,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18기념재단

Claudia Bernhard, Das Rechtsguter-Trilemma. Von der Legitimität staatlichen Strafens am Beispiel der Völkermordleugnung, Helbing Lichtenhahn Verlag: Basel, 2011.

Gunter Bertram, Der Rechtsstaat und seine Volksverhetzungs-Novelle, NJW 2005, 1476.

Thomas Fischer, Strafgesetzbuch(StGB): mit Nebengesetzen 62. Auflage, C.H. Beck: München, 2014.

Jürgen Habermas, Die Normalität einer Berliner Republik,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95.

Jürgen Habermas, Warum ein "Demokratiepreis" für Daniel J. Goldhagen? Eine Laudatio. Die Zeit, 1997.3.14.: <http://www.zeit.de/1997/12/historie.txt.19970314.xml/komplettansicht>

Stefan Huster, Das Verbot der "Auschwitzlüge", die Meinungsfreiheit und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JW 1996, 487.

Ansgar Klein (Hrsg.), Grundwerte in der Demokratie, Schriftenreihe Band 330, Bund-Verlag: Bonn, 1995.

Elisabeth Kubler, Europäische Erinnerungspolitik. Der Europarat und die Erinnerung an den Holocaust, transkript: Bielefeld, 2012.

Daniel Levy/Natan Sznaider, Memory and human rights, Thomas Cushman(Ed.), Handbook of Human Rights, London/New York, 2014.

Heiner Lichtenstein/Otto R. Romberg (Hrsg.), Täter-Opfer-Folgen, Schriftenreihe Band 335, Bund-Verlag: Bonn, 1997.

Milosz Matuschek, Erinnerungsstrafrecht, Berlin, 2012.

Brigitte Rauschenbach (Hrsg.), Erinnern, Wiederholen, Durcharbeiten, Taschenbuch Verlag: Berlin, 1992.

Michael Schneider, Die "Goldhagen-Debatte": ein Historikerstreit in der Mediengesellschaft, Friedrich-Ebert-Stiftung: Bonn, 1997: <http://www.fes.de/fulltext/historiker/00144.htm>

Klaus Vogelgesang, Die Neuregelung zur sog. "Auschwitzlüge" - Beitrag zur Bewältigung der Vergangenheit oder "widerliche Aufrechnung" ?, NJW 1985, 2386.

02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수집관리 전략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특성에 따른 5·18아카이브즈의 기록관리

이상민(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1. 서문
2.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특성과 기록관리 쟁점
3. 결론 :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 아카이브즈의 기록 수집·관리 전략과 아카이브즈의 전문적 경영

02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수집관리 전략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특성에 따른 5·18아카이브즈의 기록관리

1. 서문

2011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은 전세계적으로는 ‘한국 광주에서의 군사정권에 대항한 1980년 5·18민주봉기의 인권기록유산’으로 알려져 있다.¹⁾ 우리가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기록유산은 억압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기록이자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으로 인류가 길이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에 따르면,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고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이 기록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한군데 모아져서 인권의식의 함양과 인도주의의 진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게 적절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²⁾ 이것은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약속이기도 하고 한국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1)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본고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이라고 지칭했다.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flagship-project-activities/memory-of-the-world/register/full-list-of-registered-heritage/registered-heritage-page-4/human-rights-documentary-heritage-1980-archives-for-the-may-18th-democratic-uprising-against-military-regime-in-gwangju-republic-of-korea/> [이하 2015. 5. 10 접속 인용].

2) ‘한국 광주에서의 군사정권에 대항한 1980년 5·18민주봉기의 인권기록유산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이하 ‘등재신청서’), Nomination Form,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Ref N° 2010-26, 2010년, 3-4쪽, 8쪽.

기록이 “적절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기록이 적절한 기록시스템에서 획득되어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에 의하면 기록은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의 속성을 가지며, 이러한 기록의 속성을 보장하는 기록시스템은 신뢰성, 무결성, 법규준수성, 종합성을 충족하면서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³⁾ 기록시스템은 기록관리 정책, 기록관리 법규 혹은 규칙, 경영자와 기록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교육훈련, 모니터링을 포함한 기록관리체제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기록관리 정책과 기록관리 법규는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록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기록관리 정책과 기록관리 법규는 기록을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기록관리 방식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관리 방식은 표준적인 기록관리 절차, 즉, 기록의 선별과 수집, 정리·기술 등 가공처리, 보존처리와 보존, 접근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기록을 활용한 전시와 교육 등은 기록을 이용한 서비스에 포함된다. 즉, 보존기록관리기관(아카이브즈)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존기록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업무는 기록의 선별·수집, 정리·기술, 보존, 기록에 대한 접근 이용 서비스 제공이다. 보존기록관리 고유업무의 수준과 방식은 적절하게 수립된 기록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법규 및 제도에 의해 결정되며, 적절한 수준과 방식으로 기록관리 업무가 수행되어야 그 보존기록관리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여 조직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⁴⁾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이 기록들을 (가칭) ‘5·18민주봉기 아카이브즈(Archives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인권의식의 함양과 인도주의의 진전을 위해 공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5·18민주봉기 아카이브즈’라는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사명이 된다.⁵⁾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적절한 조직과

3) 기록관리 국제표준/국가표준, ISO 15489-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Part 1. General, 8-9쪽.

4) 이상민 역, 『공공부분의 기록관리: 원칙과 맥락』, 진리탐구, 2008, 제1장 참조. 아카이브즈에서 수집되어 보존되는 기록을 ‘보존기록’이라고 한다. 아카이브즈(archives)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보존기록관리기관이라는 의미와 보존기록(영구보존기록)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보존기록관리기관, 기록관리기관, 아카이브즈를 문맥에 따라 혼용하였는데, 본고에서 사용된 기록관리기관은 현용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기록관’이 아니라 영구보존기록을 관리하는 보존기록관리기관(archives)를 말한다.

5) ‘등재신청서’, 8쪽. 본고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라는 용어(약칭으로는 ‘5·18 아카이브즈’를 사용했다. 아카이브즈의 명칭은 소장 기록물의 속성이나 기관의 사명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카이브즈에서 수집되어 보존되는 기록을 ‘보존기록’이라고 한다. 아카이브즈(archives)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보존기록관리기관’이라는 의미와 ‘보존기록’(영구보존기록)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전문인력이 이 기록들의 제도적·내용적 특성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록들이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고 승인된 기록관리 원칙과 표준에 따라 전문적으로 수집, 정리, 기술(description), 보존,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고, 현재 다수 기관에서 수집·관리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특성과 이 기록들의 수집, 보존 및 이용에 대한 조건과 요구를 분석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최적의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기록관리기구(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에서 논의되거나 제시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록과 인권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기록관리 윤리와 최선의 업무 관행을 참고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주요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2.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특성과 기록관리 쟁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은 출처가 다양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에 산재해서 관리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은 기록 출처(provenance)와 기록물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육군, 광주광역시 등 정부기관이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
- 군사법기관이 생산한 5·18 당시 군사재판 기록과 '김대중내란음모' 사건기록 등 수사 및 재판기록
-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이 생산한 유인물,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원사료 기록
- 언론기관과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국 정부가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진기록
- 5·18기념재단이 수집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및 구술사 기록
-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
- 국회가 생산한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과 청문회 기록
- 법원에서 생산한 전두환·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 재판기록
- 국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 심의 및 집행 기록

• 미국 국무부, 국방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기록

여러 출처에서 생산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은 현재 정부와 민간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으며, 상이한 관리방식과 각기 다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복수의 출처와 복수의 관할권(custody)과 복수의 소장처를 가진 여러 기록군(fonds)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는 일은 오직 기록의 ‘지적 통제(intellectual control)’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 같이 복합 기록군들의 다양한 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술적인 방식은 각 기록군의 기록 목록을 하나의 포털로 연결시켜 통합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별개의 독립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디지털화된 기록물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구술사 기록 수집 등 지속적인 기록의 선별 수집을 위해서는 시민의 지지와 기관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추적이고 능동적인(proactive) 아카이브의 존재가 필요하다. 중추적 아카이브에서의 총괄적인 기록관리를 기획하고 기록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록출처를 가진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군·기록시리즈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점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중앙행정기관, 육군, 광주광역시 등 행정부 정부기관이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

이 기록군은 그 자체가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 속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이다. 이 기록들은 공공기관이 파악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실태와 희생 정도, 당시 정부와 군의 민주화운동 탄압과 시민의 저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정책(언론정책, 보상정책 등) 등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진상에 관한 기록과 그 이후 정부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들이다. 단적으로 이 기록들은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에 대한 탄압에 관한 핵심적인 기록이다. 유엔의 국제인권선언은 이러한 인권침해 기록들이 가해자에 의해 폐기되지 않고 영구기록으로 보존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각 기록소장기관에서 어떠한 관련 기록들이 있는지 식별하고, 이러한 기록들이 영구보존기록으로 선별·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한시기록으로 결정

되어 있는 기록을 재평가하여 기록의 폐기를 방지하고 관련 기록들을 선별하여 영구보존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장기보존 기록으로 보존기간이 책정된 기록은 국가 기록원에 이관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선별·평가가 현대 평가이론과 최선의 실무에 따라 체계적 과학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의 사본을 모두 수집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여 선별된 기록에 대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각급 기관에 존재하는 공공기록물 중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선별·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최선의 평가실무에 따라 영구보존기록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어떠한 공공기록들이 정치권력의 인권 침해 기록인가를 판별하는 일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인 정부권력기관(군, 경찰, 정보기관)이 참여할 수 없다. 이 권력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공공기록물 중에서 민주화운동 기록과 인권 기록을 평가·선별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참가자와 피해자, 역사연구자, 인권운동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민간 전문가들과 기록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한 ‘기록화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의 아카이브즈(예를 들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정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혹은 ‘시도기록물관리기관’ 혹은 각급 아카이브즈가 아닌 기관의 ‘기록관’)가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들 중에는 그것들이 가진 민감성으로 인해 이미 한시기록으로서 폐기된 기록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폐기대상 공공기록물들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민감하거나 중요한 기록들은 누군가에 의해 소장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사후에 평가·선별·수집하는 일은 중추적 인권기록 아카이브즈의 핵심 업무가 될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에서의 적극적인 기록 발굴·회수(replevin)는 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기록 수집과 맥락을 같이 한다.

행정부의 보존기록은 ‘기록화(documentation)’의 결핍이나 중요 기록물의 폐기라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기 쉽다.⁶⁾ 이러한 과거사 진실의 파악과 국민의 권리 회복에 큰 장애가 되는 제약 요인이다. 억압정권하 정부활동의 기록화 한계와 정치적 운영(권력기관의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한 행정사무적 의미의 ‘기록화’와 정부의 정책, 활동 및 국민의 대응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생산한다는 의미에서의 기록화를 모두 포함한다. 동법 “시행령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폐기와 방치 등)으로 인해 국가 아카이브즈(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록원)의 소장 기록물은 과거 정권의 국민 억압이나 인권 침해 조사활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적으로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기를 겪은 많은 국가 아카이브즈가 중요 국가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기록화에 한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또한 기존의 국가 아카이브즈의 보존기록관리 전문가(아키비스트)의 윤리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부 국가 아카이브즈에서는 아키비스트가 그저 주는 기록을 받아서 보관만 하는 “중립적 보관자”라는 부정적 개념이 팽배하며 심지어 “행정관료의 시녀-노예”라는 패배주의적 자의식이 존재하여 그러한 수동적 개념과 부정적 자의식으로 인해 정부의 기록관리에 개입하지 못했고, 정부활동의 충실한 기록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행정부의 기록을 수집하고 평가·재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행정부기록 기록화의 부정적 특성을 알아야 하고, 국가기록원 등에서 소장한 보존기록의 태생적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한편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공공기록물 중 다수 기록물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일반 시민의 기록 이용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주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개인정보로서 이루어져 있다. 공공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존재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적 정보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별에 따라 정보 공개도 달리 하여야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공공기록물에 대해 능동적(proactive)인 공개를 수행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안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록들과 개인정보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 침해를 증거하는 기록이라면 공개해야 한다. 인권기록에 관한 국제기록기구(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의 ‘보존기록 이용접근 원칙’(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은 인권침해 기록을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⁷⁾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공공기록물 수집과 적극적 공개는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즈나

7)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 2012 ICA 브리즈번 총회에서 승인. p.10. "Institutions holding archives ensure that victims of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have access to archives that provide evidence needed to assert their human rights and to document violations of them, even if those archives are closed to the general public." 이 원칙을 따르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기록관’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광주시가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를 설립하고 그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자, 연구자, 기록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거버넌스형 운영위원회에서 아카이브즈를 운영하는 것이 그러한 공공기록물 수집과 적극적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공공 아카이브즈의 민간 위탁 운영은 공공기관이 아카이브즈를 설립하고 소장 기록의 소유권(관할권)을 가지는 이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2015년 4월 한국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장, 한국기록학회 회장,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등이 광주시와 관련 단체에 권고한 바대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5·18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관련 기록물의 내용적 특성 및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와 광주시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 아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기록전문가 집단은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의 직접관리·운영”의 원칙 제5조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활동과 위탁운영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광주시의 협력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⁸⁾ 이와 같은 “거버넌스형 아카이브즈 운영위원회에 의한 기록의 수집과 관리의 필요성”은 아래 2.2항 이하에 제시된 대부분의 기록 유형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2.2 군사법기관이 생산한 군사재판 기록과 ‘김대중내란음모’ 사건기록 등 수사 및 재판 기록

1980년대 이래 육군 법무관실에서 오랫동안 관리되다가 현재 5·18광주민주화운동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군사재판 기록들은 대부분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 수사기록들로서 당시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책정되어 있던 기록들이었으나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의 중요성에 주목한 군기록관리 담당자에 의해 폐기가 보류됨으로 해서 다행스럽게 살아 남은 군기록들이다. 연도별로 기록철 제목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사건재판기록 배열방식에 따라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이하에 해당하는 기록철 제목을 가진 계엄포고령

8) 한국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장, 한국기록학회 회장,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정책 제언,” 2015년 4월 7일.

위반 사건들의 기록은 다행히 폐기되지 않았다.⁹⁾ 이 군사재판기록들은 정치인들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고 군사정부의 이들에 대한 허위 기소와 음모의 증거 기록이기도 하다. 이 군사재판기록들도 당시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인권 탄압에 관한 핵심 기록들이다.

2.1항의 일반 공공기록물과 마찬가지로 이 군사재판기록들은 그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기록의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는 기록들이다. 특히 출간되지 않은 군사재판기록은 민간 시민과 연구자가 극히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기록관리기관에 아직 기록전문가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이러한 기록들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정리와 기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군사재판기록의 활용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육군기록의 원본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기록관’인 육군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일반의 접근 이용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으므로,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한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의 기록은 전체 기록의 사본(혹은 디지털 사본)을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에서 제작하여 당해 기록의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가 소장 사본 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관할권이 있는 “광주에서 경영을 위탁한 공공아카이브즈”로서 육군기록보존소와 전문적 협의를 통해 법률에 따라 군사재판기록물 사본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면서 기록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

2.3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이 생산한 유인물,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원사료 기록

9) 1980년 10월 26일 전두환 집권 이후 서울 대학가에서 최초로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주장한 고대시위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에 관한 재판기록은 사건기록철 제목의 첫 단어가 “고대”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앞에 배열되었기 때문에 영구히 폐기되고 말았지만, 연세대와 한신대에서의 시위에 관한 재판기록은 가나다 순으로 뒤에 배열되어 있어서 폐기되지 않았다. 필자는 1999년 경에 육군본부 군법무관실을 방문하여 당시 10년 보존기간으로 책정되어 있던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므로 폐기하지 말고 보존해 줄 것을 기록관리 담당자인 모(某)원사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그리고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의 담당 학예연구관에게 이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기록의 마이크로필름 사본을 제작하도록 요청했으나 이는 추진되지 않았다.

10) ‘5·18 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를 광주시에서 시민사회에 전문적 경영을 위탁한 아카이브즈로 구축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518재단 등 광주 시민사회와 기록관리전문가 단체의 주장이다. 앞의 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 2015년 4월 7일. 여기에서 ‘기록관’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각급 기관의 현용기록 및 비영구기록 관리기관을 지칭하므로 영구보존기록관리기관인 아카이브즈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자체 기록보존서고를 지역에 따라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등으로 개칭하였으나 그러한 명칭은 현행 법률의 용어 정의에 위배되거나 용어상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명칭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명칭들이다. 본고의 각주13번 참조.

이 출처의 기록 유형은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에서의 민간 기록물 수집의 제도적·법률적 중요 쟁점을 제기한다. 당시 광주의 시민과 기자들이 출처인 이러한 유형의 기록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과 광주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 시민적 가치, 시민의 덕목을 잘 나타내주는 기록이며, 광주시민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당시의 활동과 희생, 억압적 정치권력의 시민 학살과 정치적 탄압, 인권의 심대한 침해를 증거하는 핵심 기록들이다. 한때는 이와 같은 유형의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조차 개인의 신상에 위협했었고, 정치적 자유와 알 권리의 대한 침해 등 인권의 침해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러한 기록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고, 5·18재단 등의 적극적인 기록 발굴과 수집 노력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기록들이 수집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즈는 이러한 당대 시민이 생산한 현장 기록과 관련 민간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조직·기능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료관과 국가기록원의 민간 기록물 수집체제, 수집량, 사료의 질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¹¹⁾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심대하고 그 영향이 후대에 크게 미치는 사건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만으로는 그 면모와 사회상, 그리고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나타낼 수 없다.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록선별·평가론인 ‘거시평가론’에서 추구하는 전체적 사회 표상과 대표적의 당대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는 기록은 결국 당대를 살아간 인간과 사회집단에서 생산한다.¹²⁾ 당대 시민의 활동과 삶을 기록한 일지나 일기 기록은 그리고 후대의 사후적인 구술사 기록과 더불어 ‘거시평가론’의 기록선별 방법론에 따른 가장 핵심적인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이며, 당시 군부와 광주시민의 상호 작용의 기록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시민의 증거기록을 공공기관인 광주시가 그동안 많이 수집하지 못하고 5·18재단 등 시민사회가 많이 수집한 이유는 이러한 민간기록 수집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며, 공공기관의 기록관에서 당대 사회의 주요 활동과 가치를 대변하는 기록선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다.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그동안 숨겨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었던 많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찾아내고 보존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1)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추진했던 민주화운동 사료 기증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존기록물 기증 캠페인이며 사료관의 소장 기록물은 주로 시민의 기증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12) 거시평가론에 대한 설명은 이상민, 「서울기록원의 기록 평가·선별과 서울현대사 기록의 수집」, 『향토서울』제89호, 2015년 2월, 205-207쪽을 보라.

2.4 언론기관과 미국 국무부 국방부가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진기록 (및 시청각기록)

이러한 기록의 유형은 출처와 기록의 물리적 형태에서 나오는 시청각기록물 수집·관리의 전형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기록물은 보다 감각적으로 직접적이며 파급력이 크다. 시청각기록물은 생산자에 따라 정치적 당파성과 편파적 단편성을 가지기 쉽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청각기록물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시민의 머리를 곤봉으로 구타하고 있는 진압군의 사진과 진압군이 시민의 시신(혹은 부상자)의 다리를 잡고 끌고 가는 사진은 폭력적 억압과 극단적인 인권 침해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양심과 인권 의식을 자극한다. 시청각기록물은 어떠한 문서 기록물보다 당대의 시대상을 나타내준다. 당대의 시청각 기록물을 수집·보존하는 일은 역사의 한 장면을 포착하는 것이다.

억압적인 정권 시기에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시민의 항의 시위, 민주화운동 같은 정치적 사건이나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이 생산·보존되기 어렵다. 경찰, 정보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시청각기록물들은 조직내에서 폐쇄적으로 관리되다가 폐기되기 쉽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국내외 기자들과 외국정부기관이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을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국내 언론들로부터도 시청각기록물을 수집해야겠지만, 외국 언론인과 외국정부기관들로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청각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외국 언론인이나 외국기관이 이런 시청각기록물의 대부분의 출처라는 특성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에서 시청각기록 수집 업무가 외국 언론인, 언론사나 외국 사회단체, 외국 정부기관과 접촉하여 수행해야 하는 국제업무가 되게 한다.

당시 국내 언론이 보도한 사진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과 가치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편향적인 기록물들이지만 인권의 억압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의도와 면모를 또한 드러내어 준다. 이러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및 시청각 기록을 균형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기록조사 연구자의 몫이지만, 이런 편파적 기록들이 적절하게 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즈에서 기록전문가들이 그 출처에 관한 정보와 기록의 맥락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하게 소장 목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기록서비스가 될 수 없다.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즈는 시청각기록물의 보존에만 치중한다. 조사연구자의 기록물 이용을 확대시켜, 기관의 사명

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해야 하는 ‘5·18광주민중화운동 아카이브즈’는 시청각기록물의 보존 자체 보다는 맥락의 기술(記述)과 기록의 해석, 나아가 중요 기록물의 편찬을 도모한다.

시청각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성과 전문시설이 필요하다. 기록관리기관은 대체적으로 기관의 홍보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청각 기록물 보존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며, 전시와 교육 등의 기록물 이용 서비스에서 시청각 기록물을 일반 종이기록물 보다 더욱 많이 비중있게 활용한다. 웹사이트에서 기록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서비스한다. 사진기록은 디지털로 전환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다. 사진이나 필름은 종이기록물보다 더 엄격한 보존환경을 필요로 한다. 시청각 기록물 원본은 사진이라는 시각 미디어나 녹음 같은 청각 미디어의 특성을 가지며 화학적으로 취약한 보존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보존처리와 보존환경을 요구한다. 시청각기록물의 디지털화와 물리적 보존에 드는 고비용은 민간 아카이브즈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된다. ‘5·18광주민중화운동 아카이브즈’의 경우에 이것은 광주시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아카이브즈의 상업적 수익 활동, 그리고 시민의 재정적 기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 아카이브즈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이 시청각 기록물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 시청각기록물의 상업적 이용을 증진시켜서 그 자체로 상업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시청각기록물의 보존과 디지털화에 투입될 수 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아카이브즈의 경영은 지속 가능한 아카이브즈의 전제 조건이다. 경영전문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한 시민 사회, 그리고 기록전문가 집단은 이 ‘5·18광주민중화운동 아카이브즈’의 운영을 협의체로 운영할 것을 위탁받아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조사연구자에 대한 기록서비스 활동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청각 기록물을 상업적인 활용을 증진시킴으로서 효율적인 아카이브즈 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 아카이브즈가 가진 디지털 이미지 등의 상업적 활용은 창조적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5 5·18기념재단 등이 수집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및 구술사 기록

이러한 유형의 기록들은 민간 아카이브즈가 주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들이다. 이 기록들은 당대 기록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보여주고, 군부의 폭압적인 인권 탄압을 증명하는 보완 기록들이다. 억압기관에서 생산하는 공공기록은 은폐되거나 폐기되기 쉽다. 진실을 알려줄 만한 기록은 일찌감치 선별되어 체계적으로 폐기된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수 백인정권에서 다수 민중정권으로의 전환기에 백인이 지배적인 국가억압기구에서 광범위한 기록물 파괴가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억압적 행위가 종료되었을 시점에서 관련 기록물들이 다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각종 진실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했을 때 각급 기관에서의 기록조사에 관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공공기록물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도 많지 않았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록물이 다수 결핍된 현실, 즉 “충분하고 완전한 기록”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기록화전략’(documentation strategy)에 의한 사후적인 기록의 수집이 불가피하다.¹³⁾ 또한 어떤 역사적 사실의 총체적인 진실은 다수의 참가자와 목격자의 증언에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의 참가자와 목격자가 가지고 있는 한시적이고 개인적인 기억을 한 사회의 항구적인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전문적인 구술사 기록 수집 분야에 속한다. 구술사는 ‘구조화되고 사전 연구가 충실한 역사적 질문’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의 증인이나 참가자를 체계적으로 인터뷰하여 그들이 구술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수집된다. 구술사는 원래 역사가들에 의해 역사적 증거 보존 목적으로 수집되었다. 구술사를 수집하는 이유는 문서 사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되어 있어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 역사적 참가자의 시각과 역사적 행위의 이유와 그 과정을 이해하게 해주는 증언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구술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한 개인의 직접적, 1차적인 체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존하여 연구자가 이용하게 해주는 목적을 가진다.

구술사 기록의 수집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구술사는 구조화되고, 주제나 사건에 대한 사전 연구가 충실한 인터뷰 개요와 인터뷰 질문을 통해 구술자로부터 정보가 수집된 것이어야 하며, 통제·관리되고 기록화된 인터뷰 환경에서 채록되어야 한다. 구술사는 어떤 사건의 목격자나 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

13) 이상민, 「서울기록원의 기록 평가·선별과 서울현대사 기록의 수집」, 『항토서울』제89호, 2015년 2월, 200-205쪽.

접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1차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어야 한다. 구술사는 수집 및 처리 이용의 각 단계에서 저작권,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인권침해기록의 수집 행위에 의해 희생자와 목격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건드리거나 그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구술사 수집자는 인터뷰 시에 구술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구술자의 프라이버시의 존중, 기존 역사적 해석과 상이한 새로운 해석이나 주장의 존중, 구술자에 대한 압박이나 반박 질문이 잘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술사 수집을 위해서는 구술자의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술사 수집자는 구술사 프로젝트의 목적, 배경, 범위, 과정, 수행 방식, 기대치, 결과물의 이용에 따른 문제, 저작권 권리의 양도 문제, 제3자나 구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에 대해 구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구술사 수집자는 수집되는 구술사 정보 내용에 나타난 구술자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공익/공공안전 목적 혹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구술사 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술사 정보 내용의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 등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구술사 수집자는 일반적인 연구윤리와 역사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구술사 수집자는 충실한 역사적 인터뷰를 준비할 의무가 있으며, 구술사 주제/사건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예를 들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역사적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의무가 있다. 구술사를 수집하는 중에 증거편의주의, 목적에의 정도, 부분의 일반화나 전체화, 주관화의 은폐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구술사 수집은 역사적 연구의 사료의 수집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구술사 수집자와 피구술자의 당파성에 따라 사건이 이해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양자에게서 공히 역사적 사실의 인식과 역사적 해석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실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료비판 기술이 필요하며, 구술자나 구술수집자의 주관성과 상이한 세계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구술사 수집자는 구술사에 나타난 사실에 함축된 주관성과 이데올로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¹⁴⁾

14) 이상민, “대통령 구술사 수집과 이용에서의 윤리적 법적 문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구술사세미나” 연구발표문, 2009년 11월 25일.

구술사 기록의 수집은, 한정된 예산과 정형적인 업무방식으로 인해(직제와 업무분장이 고정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의미에서)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보존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기록관’(예를 들어 국가기록원이나 광주시 기록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 업무이다.¹⁵⁾ 구술사 기록물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록물이므로 기증 약정서나 기록물공개이용 동의서 등 기증 조건, 기록물의 소유권, 관할권, 접근이용권,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증자와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법률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 구술사 수집 기관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적 구술사 수집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공공부문의 아카이브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의 구술사 수집 현황을 보면, 국가기록원에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일부 대통령기록 구술사를 수집한 바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학술진흥기관에서 한국정치사에 대한 장기적인 구술사 수집 프로젝트를 학계의 연구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특정 아카이브즈가 구술사 수집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것은 구술사 수집자의 개인적 전문 역량과 전문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수집 역량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전문적 구술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아카이브즈로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구술사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아카이브즈는 일반적으로 구술사 내용의 프라이버시와 위해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보호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구술자와 구술 내용에 있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와 민감한 정보를 법제도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미비하고, 충분한 정보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위험성조차 갖고 있다.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구술사를 생산 보존하고 있는 아카이브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 아카이브즈에서 기록물의 정보 보호와 적절한 공개를 보장하는 정치적·행정적 환경이 열악하다(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공공부문 아카이브즈를 옥죄는 권력기관, 정보기관, 수사기관 등의 정치적 압력, 상

15) ‘기록관’은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자적인 영구기록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나 일반행정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영구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전에 관리하는 한시기록물 관리기관을 가리킨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3조). ‘특수기록관’은 예외적으로 비공개기록물을 업무상 필요시 30년 이상 장기 보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동법 제19조 4항).

급 행정기관의 비전문적 정책과 지시로부터 전문적 아카이브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구술사 내용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보호되어야 할 정보를 가진 기록들이 임의로 공개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공공부문 아카이브즈에서는 이러한 구술사 기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쉬우므로 구술사 기록의 수집조차 용이하지 않게 된다. 정보의 보호와 통제에 있어서 정치적 압력, 상급 행정기관의 비전문적 정책과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가 민간 기록전문가 및 시민사회에 의해 경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린다 쇼프스는 “구술사 인터뷰는 단순히 경험적으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평가해야 하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 투명한 문서가 아니다. 구술사 인터뷰는 말로 하는 역사적 사건의 설명이다. 구술사 인터뷰는 개인 기억의 인공적 산물이며, 이데올로기이며, 언어적 표현이며, 구술사가와 구술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¹⁶⁾ 민주화운동과 인권 경험의 구술사는 단순히 연구되어야 할 역사 사료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역사적 사건의 설명이다. 국가 아카이브즈는 이러한 구술사 기록의 특성(개인의 기억이자 개인의 역사이면서 개인의 역사 해석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구술사 기록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구술사 기록이 민간 기록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아카이브즈에 의해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6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

이 유형의 기록을 수집·관리하는 문제의 쟁점은 “현재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공공기록으로서의) 병원 치료 기록이 공공기록물이므로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즈에서만 관리되어야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잘못된 인식이며 단편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이러한 유형의 기록이 개인적인 의료기록이라는 점이다.¹⁷⁾ 우선 모든 공공기록물이 반드시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즈에서 직접 영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유형의 기록은 원래 병원에서 생산한 환자진료 기록이었으나 군

16) Linda Shopes “Legal and Ethical Issues in Oral History,” Handbook of Oral History.

17) 이는 국가기록원의 잠정적 해석에 지나지 않으며 공공부문 아카이브즈의 민간 위탁 운영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시도기록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국가기록원이 부인해야 할 사안도 아니다.

부의 시민 학살과 잔인한 폭력적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증거 기록이 되었다. 의료기록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기록이다. 의료기록이 민간 병원에서 생산되었다면 민간기록물이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생산되었다면 공공기록물이 된다. 국립대학병원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이다. 그중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10년 보존기간을 가진 한시 기록이다. 즉, 병원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폐기될 수 있는 기록들이다. 그렇다고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의료기록들이 영구보존기록물로 책정된 것도 아니다. 병원은 당해 의료기록에 대해 영구보존기록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보존기간 재책정이 시행된 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시기록인 병원 진료 기록을 공공부문의 아카이브즈(혹은 관리를 위탁받은 기록관리기관)가 이관받아 영구보존기록으로 관리할 수는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록이 생산기관에서 폐기되거나 자체적인 이용을 위해 장기 보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기록은 환자 개인에 관한 기록물로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기록이다. 의료기록은 병원의 접근 권한이 있는 자와 당사자만이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며,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 기록이다. 기록물 가공처리를 수행하는 기록관리기관 외에는 병원이 아닌 제3의 공공기관도 접근할 수 없는 기록들이다. 그러나 역사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의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부상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이 광주시 등 공공기관에 피해자의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공됨으로써 공공기록으로 전환된 것은 의료기록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간 의료기록의 원본은 여러 병원에 산재해 있으며 의료 기록의 법적인 보존기간이 10년이므로 현재에는 다수가 보존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도 법적인 보존기간에 따라 처리되었다면 대부분 폐기되었어야 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어도 잘 폐기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 대부분의 현존 병원 치료 기록은 희생자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보상을 청구한 개인이 갖고 있던 기록이거나, 병원이 폐기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던 기록이거나, 개인이 병원에 요청해서 발급받은 기록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기록들은 주로 공공기관이 개인으로부터 접수한 기록물로서 그 원래의 출처가 민간병원일 경우에는 민간 기록이다. 접수되어서 공공기록이 된 민간의 병원 치료기록이나 공공 병원의 치료기록은 대부분 사본 기록이며 이러한 민간 출처 사본 기록들이 단지 공공기관에 한데 모여져 소장되어 있다고 해서 민간에 위탁 관리를 하면 안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러한 병원 치료 기록들은 어느 아카이브즈에서 누가 관리하던 간에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는 기록이며,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역사적 조사연구를 위해 공공에게 이용될 수 있는 기록이다. 아카이브즈가 수집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수의 피해자·희생자 관련 시민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수집될 수 있는 기록 종류이지만, 공공부문 아카이브즈에서는 이미 보상 및 명예회복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러한 수집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군부의 시민 학살과 잔인한 폭력적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이러한 기록들을 추가로 수집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료기록이라는 이유로 연구자에게 기록을 제공하지도 않는다면 이러한 병원 치료 기록을 보존하는 의미가 없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 학살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역사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병원 치료 기록을 제공한 개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기록 수집이 필요하다. 보상과 관련하여 시민 개인이 제출한 아래 2.10 항목의 보상 관련 기록과 더불어 이러한 병원 치료 기록들은 시민과 병원이 그 원본기록의 출처이며 공공기관은 업무를 위해 단지 사본의 위탁 관리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그러한 사본 기록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어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러한 병원 치료 기록의 관할권 문제와 이용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의료기록은 법률전문가와 기록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만 안전하게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다.

2.7 국회가 생산한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과 청문회 기록

이 기록(시리즈)의 출처는 국회이며 국회기록물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보존되고 활용된다. 그러나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이런 종류의 기록을 찾아 활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아직 목록정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기록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청문회 기록들의 상당수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기록이지만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관련 국회 행정기록이 영구기록으로 보존되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된 적은 없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당해 기록시리즈에 대한 목록정리 및 기술 작업을 국회기록보존소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당해 국회기록물의 사본 제작을 통해 국회가 소장하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수집해야 한다. 또 국회에서 출간된 청문회와 위원회 회의록을 수집하여 아카이브즈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자체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소장 기록을 정리·기술하므로 5·18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청문회 관련 기록이 우선순위에 놓여있지 않을 수 있으며, 5·18기록 아카이브즈와의 협력 작업을 통해 관련 기록을 정리·기술하여 신속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행정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아카이브즈가 헌법기관에 속한 입법부의 국회기록보존소에 이러한 공동 기록정리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국회가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사본)을 수집하고 아카이브즈의 기록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방송사에서 TV로 실황 중계한 청문회의 녹화 필름은 진상 규명의 중요한 자료이지만 아카이브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아카이브즈에서의 저작권 기록의 복사와 열람은 개인에게 허용되지만, 저작권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과 그것을 2차적으로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위반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국회 청문회 기록의 이용과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저작권 문제를 협의하고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한 국회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청문회 내용을 수집하여 주요 핵심 사안을 정리하고, 수집된 국회 기록 목록을 제공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모든 국회 기록을 아카이브즈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8 법원에서 생산한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 재판기록

이 기록(시리즈)의 출처는 사법부이며 사법부는 법원기록보존소에서 재판기록의 원본을 보존하고 있다. 판결문,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생산한 ‘전두환·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 재판기록’은 일반에게 기록이 제공되지 않는다. 재판기록 역시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록이며 이로 인해 기록의 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다. 법원이 소장한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 재판기록 목록(기록철 목록이나 기록건 목록)이 제공되고, 목록에 있는 기록들이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 재판은 권력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인권 침해 범죄를 재판하는 것이므로 국제기록기구회의(ICA)가 제정한 ‘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 6조에 따라 일체의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법원기록보존소가 이

러한 기록접근 원칙에 따라 기록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연구자들이 당해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에서 타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일은 타 기관의 아카이브즈와의 공동의 기록관리 필요와 긴밀한 협력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와 국가기록원과 입법부, 사법부의 기록물관리기관(법률에 따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에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어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양한 출처의 기록군을 연결해야 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타 기관의 아카이브즈와 공동의 기록관리(특히, 기록정리·기술과 기록 이용서비스 제공)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아카이브즈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2.9 국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 심의 및 집행 기록

이 기록(시리즈)의 다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을 심의하고 집행한 광주시가 생산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기록(시리즈)의 일부는 법원이 생산한 재판기록의 사본으로 5·18희생자 보상 심의 및 집행을 위해 희생자·부상자 혹은 그 가족이 피해의 증거로서 제출한 기록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를 건립한 광주시에서 소장한 기록이므로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2.1항의 행정부 행정기관 기록의 평가·수집과 이용의 문제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기록시리즈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범위가 심대하다. 광주시의 보상 심의 및 집행 기록 시리즈에 있는 거의 모든 기록이 개인정보 기록이라고 보면 된다. 이 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심의 보상 신청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혹은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들 중 상당수가 접촉하기 어렵거나 이 보상 기록들의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 아카이브즈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광주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획득하는 일 뿐이다. 광주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시민에게 인지시켜 대중의 신뢰를 획득한 아카이브즈는 역으로 기록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는 등 기록의 수집과 이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10 미국 국무부 국방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기록

이 기록시리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본국에 보낸 보고서와 미국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부에서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미국정부의 기록들이다. 대부분 생산 당시에는 비밀기록으로 생산되었다가 비밀기록관리제도(Executive Order 13233)에 의해 25년이 경과한 후 비밀이 해제된 기록이다. 그리고 비밀보호 기간 중에도 누구나 미국정부의 비밀기록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의 비밀해제 요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외국인 연구자도 FOIA 신청을 통해 기록을 파악하고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외교·첩보 기록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많이 비밀해제되고 일반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기록이다.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을 생산했다. 이러한 외국이 생산한 한국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 기록은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 아카이브즈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계속 파악되고 수집될 수 있는 기록들이다. 미국정부의 비밀기록과 같이 외국의 국가기록이 다른 나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에 포함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일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아카이브즈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을 찾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보다 용이하게 촉진한다.

외국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은 피해자·희생자의 보상 심의에 채택될 증거기록이 되기도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2차 심의 신청자 중의 일부는 5·18 쿠데타 당시 광주에서의 인권 탄압과 광주시민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광주시 외의 지역에서 벌이다가 체포, 구금, 제적, 고문, 징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계엄포고령 위반 판결문에는 당시 군부의 지시로 “광주”라는 글자가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들의 피해자 인정 신청을 기각하고 “광주”와의 연관성이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언급한 10월 26일의 고대시위 사건의 참가자로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던 필자는 미국 국무부의 비밀해제 전문에서 고려대에서의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시위 문건을 찾아내어 그 원문과 번역문을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여, 신청자 전원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¹⁸⁾ 이

18) 당시 2차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희생자 인정 보상 심의를 했던 신청자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기소되어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에 설치된 군사법정에서 재판장 박세직에 의해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려대학교의 도천수, 최봉영, 박구진, 김관희, 이상진, 이상민, 전성, 박민서이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된 후 악명 높았던 성북경찰서에서의 취조 과정에서 무차별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며, 장기간 복역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관희는 복역 후 병에 걸려 일찍 사망하였다.

러한 조치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학내 시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은 대부분의 희생자들에게도 적용되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시공간적 의미를 확대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 아카이브즈는 외국의 기록관리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국제교류활동을 활성화하여, 외국에서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찾아내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적 국제교류를 통한 기록수집활동은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에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쉽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전문적 사료수집기관이 외국의 역사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왔고 역사연구자에게 제공해왔다. 외국 국가기록수집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기관과의 기록수집 공동협력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해외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조직적으로 속해 있음으로 인해 전문적·독립적·정치중립적 운영이 불가능한 공공부문의 아카이브는 이와 같은 국내외 협력적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활동을 통해 해외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3. 결론: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 아카이브즈의 기록 수집·관리전략과 아카이브즈의 전문적 경영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이제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에서 한군데 모아져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되어 이 아카이브즈의 기관 사명인 인권의식의 함양과 인도주의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인류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검토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특성에 따라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에서 기록전문가와 관련 시민사회의 정책 결정과 경영 참여가 보장된 거버넌스형 아카이브즈 운영 방식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들이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군의 중요한 특성은 첫째, 이 기록들이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이며, 따라서 출처 조직과 기록 유형에 따라 상이한 관리방식(특히 기록수집과 이용 제공 업무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록들은 기록관리 국제표준에 근접하는 수집·정리·보존·접근이용 제공의 수준부터 최소한의 보관만 되고 있는 수준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전문기록관리 상태에 놓여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록의 수집과 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기록들이 생산되고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는 이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을 관할하는 복수의 기록관리기관들이 서로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할 기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을 수집·관리하는 기록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아카이브즈로서 중심적이고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 일환으로 '5·18아카이브즈'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검색이용 포털을 구축하고 능동적인 기록 수집과 이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대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광주민주봉기 인권기록"을 보존하여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 신장을 도모한다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군에는 공공기록과 민간 기록이 혼성되어 있으며, 기록 수집과 이용 제공에 있어서 일반 행정기관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록관리의 여러 쟁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 기록관리체제 아래 기록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5·18아카이브즈'는 시민사회와 기록전문가 집단이 아카이브즈의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즈가 갖는 경직된 제도적 운영 상의 한계를 극복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새롭게 수집하고, 그 기록들이 이용될 수 있게 전문적인 가공과 보존처리, 기록이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은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동일하게 적합한 보존환경에서 고품질로 가공처리되어 보존되고, 최대한으로 기록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만큼 기록네트워크의 중추적인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각급 기록 소장 기관에서 5·18 기록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최대한 공개 이용될 수 있게 기록 기술, 해제, 접근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기록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나 쌍방 협력 작업을 통해 고품질의 기록가공처리 서비스를 타 소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기록기구회의(ICA)의 '기록 접근 제공 원칙'이나 '기록보존서고 시설 표준', '국제기록기술표준(ISAD(G))' 등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주요 소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표준들은 그 자체가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와 각 기록소장기관의 기록 처리, 접근 제공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으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즈’는 각 기록소장 기관이 관련 기록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심화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게,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 선별·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각 기록소장 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광주 시민사회의 역사의식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기록전문가의 전문적 식견과 지식과 결합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구술사 기록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에서 작성한 “구술사 수집·관리·이용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속한 아카이브즈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쉽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의 조직과 기능에는 구술사 수집 업무와 전문 직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은 개인 정보를 포함한 공공기록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최대한 이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기록기구의(ICA)의 ‘기록 접근 제공 원칙’은 인권 침해의 기록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 제공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인권 침해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기록”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아카이브즈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이러한 특성과 접근 원칙을 고려하여 기록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각 기록관리기관에 인권 침해 기록에 대한 최대한 공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같은 부처 소관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과거의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들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는 현행기록이 아니라 영구보존기록이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첨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추진되는 동안 광주시에서는 시조례의 개정과 ‘5·18아카이브즈’ 자체 접근 이용 규정을 제정하여 비공개기록을 최소화하여 기록공개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기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아카이브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세계기록유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기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광주시민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카이브즈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성공적인 아카이브즈를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어떠한 정치적 환경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사명을 추구해야 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치적으로 조종되거나 방해받아서 안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이 인류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보에 공헌하는 인권과 인도주의의 기록유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유산을 보호하는 아카이브즈는 당파와 정치적 이해를 초월하여 운영되고 지원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사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파가 지원해야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가치를 흐드는 정치적인 음모와 활동은 인류기록유산을 파괴하려는 반인도주의적이고 반문화적인 반달리즘이다. 광주의 시민사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게 이 기록유산의 의미와 이 아카이브즈의 사명을 상기하고 그 위협에 대해 감시해야 한다.

여섯째,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록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은 그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이 기록에 대한 인식과 아카이브즈가 없던 국가나 지역에는 “기억의 기록화” 또는 “기억으로서의 기록의 수집과 기념화 활동”이 전개되었다. 국가의 기록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구술사 기록의 수집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와 같이 “기억의 기록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기록이자 반인권적 과거를 청산하고 인도주의적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반성의 도구가 되므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에서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5·18재단이나 관련 단체 등 광주 시민사회의 기록을 관리하는 현용기록관리기관이면서 아카이브즈로 기능하여 광주시와 광주 시민사회의 활동을 투명하게 하고 대중에게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이러한 제도적 공헌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수호 정신과 역사적 의의를 높일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광주 시민사회의 기록은 그 자체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새로운 기록유산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03

계엄군의 광주봉쇄: 북한군의 침투는 가능했는가?

안길정 (5·18재단 전임연구원)

- I. 서론
- II. 봉쇄의 양상
- III. 봉쇄와 유혈진압의 관계
- IV. 결론

03

계엄군의 광주봉쇄: 북한군의 침투는 가능했는가?

I. 서론

이 글은 1980년 5월 17~27일 당시 계엄군의 광주일원 봉쇄상황을 추적하여 외곽 봉쇄가 광주 항쟁의 진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계엄군은 왜 광주를 봉쇄하려 했는가? 봉쇄 포위망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었는가? 봉쇄의 군사작전상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해명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근자에 들어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서 활약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 이 글에서 얼마간 언급할 생각이다. 당시 계엄당국이 생산한 기록을 일람할 때, 한미 연합사 내지 미국의 군용자산들¹⁾을 검토할 때,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²⁾를 감안할 때, 북한군의 공중·해상·육상 침투는 불가능했으며 있지도 않았다. 이 글에서는 주로 계엄당국이 생산한 문서에 기반하여 논지를 전개해 보겠다.

1) 여기에는 코럴시호 같은 항공모함이나 조기정보기AWACS등이 포함된다.

2)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6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0년 사건 직후 계엄사발표, 1985년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청문회, 1995년 검찰과 국방부 조사, 1996~1997년의 5·18재판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시절인 2012년에 있었다고 하는 국정원의 비공개 조사까지 더하면 여섯 번이다. 이 여섯 번의 조사·발표 중에서 북한군이 대대 규모로 들어왔었다는 정황은 한번도 포착된 적이 없다. 여기서 전두환이 도청지도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이른바 '독침사건'을 조작하고 영암 고정간첩 침투설까지 조작하면서까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을 지녔던 1980년이나 재임시절인 1985년에 북한의 광주개입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 봉쇄의 양상

1. 봉쇄의 주요 지점

계엄군에 의한 광주 일원의 외곽봉쇄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일반적인 이해는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앞 집단발포 뒤에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이동하여 차단·봉쇄작전을 폈다는 것이다.³⁾

그러나 군 자료에 의하면 봉쇄는 이미 5월 17일 밤 계엄확대와 더불어 예고되어 있었으며, 5월 20일 23:25에 2군 사령부가 소요확산 저지를 위해 “광주시 외부로 나가는 교통로 봉쇄”를 하달(작상전 제445호)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⁴⁾

이때 2군 사령부는 외곽 봉쇄작전을 수행하는 계엄군에게 “무기휴대 폭도의 봉쇄선 이탈 절대거부, 폭도 중 반항치 않는 자 체포, 반항자 사살, APC 또는 차량 이용 강습 시도 시는 사살, 현 봉쇄망은 주도로만 치중치 말고 지선도로도 장악, 폭도탈출 절대방지”⁵⁾ 하라고 명령했다.

봉쇄작전의 주력부대는 21일 새벽 광주에 투입된 20사단이었다. 동 사단 60·61·62연대는 서울의 대학가에 배치되어 있다가, 20일 22:40에 서울을 출발하여 이튿날 04:40에 송정리에 도착했다.⁶⁾ 이들 3개 연대는 전투교육사령부(상무대)에 근거지를 두고, 시위대의 광주 진입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한 봉쇄 작전을 08:45에 개시하였다.⁷⁾ 22일 15:35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명령을 공시했다. 그는 시위의 “전국 확산 방지, 선무활동으로 시민과 불순세력 분리, 교도소 끝까지 방어, 광주시 외부로 나가는 도로망 차단” 등을 명령했다. 그리하여 이 날 해가 떨어진 저녁 8시를 기해 광주시 일원은 계엄군에 의해 타 지역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3) 『한국을 뒤흔든 광주의 11일간』(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부록), pp.190~191.

4) 2군 사령부, 『광주권 총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1980).

5) 20사단, 『총정작전상보(1980.5.21.~5.29)』(1980), p.8.

6) 이들 3개 연대의 서울 출발시각이 2군 사령부의 ‘작상전 제445호’가 하달되기 전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5.21 08:45 20사단 병력 광주 진입 저지. ○ 20사 지휘차량 육로 이동, 광주공단 입구 도착시 차량 1/4톤 14대 피탈, 인원 2명 부상, 1명 실종, 잔류 25명, 12:00시경 탈출 복귀. ○ 폭도들의 광주시 진입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봉쇄하기 위한 작전으로 최초 부대배치 실시. 『20사단 작전상보』. 한편, 같은 자료에는, 20일 밤부터 광주 서부서 로타리 부근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차량을 차단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시간	내용	전거
08:45	20사단, 폭도들의 광주시 진입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봉쇄하기 위한 작전으로 최초 부대배치 실시.	20사 작전상보
17:50	전교사 작전지시 80-4호: 광주시 북쪽 3개 지역 봉쇄하라.	전교사 작전일지
19:30	전교사 작전지시 80-5호: 광주시 외곽도로 완전 봉쇄하라.	전교사 작전일지
18:56	20사 61연대 3대대 톨게이트 봉쇄를 위한 투입(11/228).	20사 작전상보
19:00	8시 30분까지 도청과 도경에서 조선대 쪽으로 군 철수 (1만여명). 외곽 주요도로 봉쇄지점 점령 완료.	

[표1] 5월 21일 시간대별 봉쇄 상황

부대	지점	병력 규모
3공수	교도소 (순천방향)	1개 여단 [265/1261] ⁸⁾
7공수	(화순 방향)	[82/604]
11공수	소태동 (화순 방향)	1개 여단 [163/1056]
31사단	오치 (광주 북방= 담양·장성 방향)	1개 중대 [22/294]
20사단 [308/4778]	극락교 (광주-송정간)	1개 대대
	백운동 (광주-목포간)	1개 대대
	고속도로 톨게이트 (광주-전주)	1개 대대

[표2] 『전교사 작전일지』에 나타난 부대별 봉쇄 지점

요컨대 계엄군의 광주시 외곽봉쇄는 광주와 외부를 잇는 모든 방면의 도로를 차단, 고립시키는 것이었다.⁹⁾ [표2]에서 보인 7개 방면의 간선도로 중에서 다음 지점에 군대가 바리케이드를 쳤다. 즉 송정리 방면으로 통하는 화정동, 화순방면으로 통하는 지원동(주남마을), 목포 방면으로 나가는 송암동, 여수 순천 방면의 문화동, 31사단 방면의 오치, 장

8) 이 표 안에서 기울임체는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 조사결과보고서』(2007.7.24.), p.83에서 옮겨 온 것이다.

9) “광주 지역의 계엄군은 22~23일 사이에 광주시로부터 원전 철수, 광주시 외곽에 부대별 책임지역을 할당, 배치함으로써 광주와 전술한 17개 소요 확산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과 연결하는 모든 도로를 완전히 차단 봉쇄했다.” 보안사, 『제5공화국 전사』 제4편(1982), p.1660. 이 책은 마치 계엄군의 광주봉쇄가 22일 이후에야 실시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2군 사령부의 ‘작상전 제445호’가 이미 20일 23:25에 내려졌다고

성 방면의 동운동, 그 외 광주교도소 일대 등이다.¹⁰⁾

위 7개 주요 지점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도로의 결절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점에서는 총격에 의한 사망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국가 보안시설이 있는 화정동이나 문화동은 계엄군의 봉쇄가 한층 삼엄했고 사상자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화정동은 국군통합병원, 전투교육사령부, 그리고 군대의 신경망인 505보안대가 가까운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은 송정리 군용비행장이나 거기에 주둔한 미군기지와의 근접했으므로 봉쇄는 삼엄했다.

“송정리에서 시위대 4명에서 지프에 올라 18일 오후 2시 20분 광주 도청에 도착했다. 19일 밤 10시 넘어서 송정리로 되돌아가려 했더니 화정동 통합병원 앞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 맨 앞은 철조망 넝쿨과 3각 철대로 가로막혔고, 그 뒤쪽으로 모래주머니로 겹겹이 쌓은 진지와 기관총이 있었다. 맨 뒤쪽에는 진봇대 크기의 통나무가 쌓여 있어 삼엄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는 밤인데다 가로등도 없어 어두웠다. 길 양쪽에는 군대가 잠복하고 있었다. 다가가면 갈겨버릴 것 같아 근접할 수가 없었다. 광주를 빠져나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정리로 가려면 옆 산길이나 구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잠복한 군인들에게 걸릴까봐 무서웠다. 되돌아 도청으로 들어가 먹고 잤다.” (임영수, 2015. 4. 30. 증언)

[그림: 광주-송정간에 설치된 계엄군의 바리케이드]

22일에는 여기서 무차별 발포가 있었다.

“5.22. 18:00경 육군통합병원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한 20사단 62연대 제2대대 병력은, 군부대 요원의 치료혜택을 위하여 통합병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전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밀어내면서, 병원에 인접한 화정동 주택가에 무차별로 총을 난사하여 집 안방에 있던 이매실(여, 68세)과 집 옥상에서 총격전을 구경하던 함광수(남, 16세) 등 8명의 시민을 총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또한 담양을 거쳐 여수 순천 방면으로 빠지는 길목인 문화동 쪽 역시 봉쇄가 철통같았다. 여기에는 국가 보안시설인 교도소가 있었고¹¹⁾, 중무장한 부대가 방어를 하고 있었다.

10) 전남대에 주둔하였던 3공수여단은 5월 21일 17:30 광주교도소에 도착하여 보병 31사단의 교도소 경계임무를 인수받았으며, 화순방면의 주남마을에는 7,11공수가 주둔했다. 그밖의 지역에도 21사단의 병력이 증파되어 배치되었다.

11) 당시 광주교도소에는 정치범 180명을 포함한 총 216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21일 오전에는 향토사단인 31사단 96연대 1대대 13/446명이 경계 중이었으나, 계엄군의 도청앞 발포 뒤 시민군이 등장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전투력이 우수한 공수 특전단으로 교체되고, 23일 오후 7시 이후에는 20사단으로 교체된다.

시위의 확산을 위해 외부로 나가려는 시위대 트럭은 계엄군의 격렬한 총격을 받았다. 비록 시위대는 무장을 하였으나 화력이나 훈련정도가 특전부대와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5.21. 19:20 __ 3여단, 교도소에서 바리케이드 작업 도중 구난차 1대, 트럭 2대, APC 1대에 분승한 폭도들, 기관총 난사. 민간인 2명 사망. 아군 피해 없음.”¹²⁾

“5.21. 19:30 __ 무장폭도 교도소 기습, 장갑차 등 차량 9대로 와서 총격. 수비병력 교전 끝에 격퇴. 군인 4명 부상, 차량 1/4 1대, 1/2 5대, 장갑차 1대, 1/2 소방차 1대, M1 3정, 실탄 112발, 카빈 28정, 단창 4개, LMG 실탄 39발, 사살 1명, 생포 1명, 부상 8명.”¹³⁾

첫번째 기사는 31사단을 대체하고 들어선 공수특전대가 교도소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던 중 접근해 오는 시위대에게 무차별 발포를 한 상황이다. 시위대가 기관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공수대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두 번째 기사를 보면 M1과 카빈 소총으로 무장한 ‘폭도’가 사살되고 8명이 부상하였다. 여기서 3공수여단은 마치 폭도들의 습격을 격퇴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¹⁴⁾ 그러나 80년 5월 당시 취재 활동차 여러 현장을 두루 목격하였던 김영택 기사는 시위대의 교도소 공격이 실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⁵⁾

22일에는 봉쇄가 더욱 강화된다.

2. 전화와 통신의 두절

계엄군의 광주 봉쇄는 육상 교통로만을 차단, 두절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계엄군은 언론 통제를 통해 도청 앞 발포를 숨기고 무장 봉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21일 저녁 무렵부터 외부로 통하는 전화를 모두 단절시켰다. 계엄군이 무서워한 것은 폭도가 아니라 집단 발포로 인한 시민 살상의 진상이었고 무장 봉기의 확산이

12) 『특전사 전투상보』.

13) 『전교사 작전일지』.

14) “5.21 18:00 __ 20여 명의 시위대들이 트럭에 분승, 총기를 휴대하고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려다 이중 6명이 현장에서 사살됨.” 『특전사 전투상보』.

15) 시위대의 교도소 습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정황과 증언에 의해 부인된다. 김영택, 『5·18 30년 총정리, 5월 18일 광주』, 역사공간, pp.440~448.

었다.

시민들은 전화 불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챘다. 그리고 불통이 ‘폭도’의 파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계엄군의 ‘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일어난 것에 분개했다.

5.21. 18:00. 서울, 광주 시외전화 불통.

5.22. 12:30. 광주 전신전화국 폭도 침입. 시외전화 개설 강요. 불응시 폭파하겠다고 협박.

5. 22 14:00. 광주 전신전화국에 무장청년 1명이 들어와 전화국을 폭파하려고 했으나 학생들이 잇달아 들어와 이를 저지, 학생들이 경비를 섰다.¹⁶⁾

계엄군은 전용전화와 무전기를 통해 작전 수행에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으나, 전화불통으로 인한 광주 시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해 치달았다. 광주에서 피난하지 않았던 외국인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예외가 있었다.

5월 23일: 대사관과는 이상한 방법을 통해 연락이 되었다. 5월 21일 수요일 이른 새벽시간에 광주와 나머지 도시들 사이의 모든 전화선이 두절되었다. 송정리에 있는 미군기지는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군인들로부터 떨어진 외곽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전화시스템은 광주지역 전화시스템의 일부였다. 그래서 내 친구 공군 하사 데이브 힐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다. 그렇지만 미군기지의 전화시스템은 한국군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한국군은 광주시의 정보가 안팎으로 흘러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들과 광주시민들 사이의 전화선을 차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미군 사령관이 설득해서 미군기지에서도 우리집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한국군이 허가하게 했다. 잠시 부차적인 협상을 한 후에 한국전화 교환수가 내가 전화하는 것을 받아 미군기지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는(피터슨과 미군기지에서도 일하고 있는 공군 하사 데이브 힐) 하루에 한두번 정도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¹⁷⁾

16) 『전교사 직전일지』.

17) 아놀드 피터슨(정동섭 옮김), 『5·18광주사태』, 풀빛(1995), pp.130~131. 피터슨 목사는 80년 5월 을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피난하지 않고 광주 양림동에 머물며 헬기 기총소사 사진을 촬영한 분이다. 위에 소개한 날짜의 직전 내용을 더 소개한다. “5월 22일: 우리가 떠날 때 이용했던 그 길을 통해 광주에 돌아가고자 했으나, 이미 그 길은 막 베어낸 나무들로 차단되어 있었다. 군인 1개소대가 그 길을 지키고 있었다. 총을 겨누어 우리를 멈춘 후에 우리가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존과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광주에 살고 있고, 가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광주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마침내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도록 했지만 광주가 곧 공격받을지 모른다고 주의를 주었다.”

전두환 집단은 외부로 통하는 길을 뚫고 막아 광주에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규모 병력과 화력을 동원한 도청 탈환작전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계엄군측이 포위망 안으로 식량 반입을 통제하려 한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은 “단수 단전을 시한부로 실시하고 식량반입도 통제함으로써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불만이 고조되어 폭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¹⁸⁾을 고려한 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III. 봉쇄와 유혈진압의 관계

1. 지휘부의 교체와 유혈진압 채택

도청에서 철수한 계엄군은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탈환의 기회를 엿보았다.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12·12쿠데타의 주역들은 보안사를 기반으로 사실상의 군 통수권을 행사하면서 광주항쟁의 무력 진압을 준비했다.¹⁹⁾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에서는 진압작전을 검토한 뒤 5월 23일자로 이상훈 작전차장 명의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육본 작전참모부장이 전교사를 방문해 현지 지휘관들과 무력 진압 방안을 논의했다.²⁰⁾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제2군사령부 작전참모와 최종 진압작전을 협의해 작성한 뒤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도청을 평정하는 3가지 방안(시민 자체 해결지원, 광주시 장기봉쇄,

18) 김재명 당시 육본 작전참모부장은 육본 및 2군의 작전판단(육군차장실에서 작성)을 소개하고, 이때 제1방안으로 시민자체 해결지원, 제2 방안으로 광주시 장기봉쇄, 제3 방안으로 조기 평정안을 입안했으며, 조기 진압작전만이 피해가 극소하다고 상신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 재진입작전(상무총정작전)의 입안과정」, 『5·18수사기록 14만 페이지의 증언』(월간조선 1999년 1월호 별책부록), pp.398~399.

19) 5월 23일 이른 아침 계엄당국은 계엄사령관실에 모여 「전교사 총정계획」을 확정하고, 무력 재진압을 확정하였다. 이희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시간을 끌면 광주시민은 사실상 현재 인질상태로서 일의 폭도측에 가담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선량한 시민의 대정부 원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전은 조기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시민군측과의 협상을 아예 배제하였다.

20) 이 면담에는 전교사령관, 특전사령관, 3개 공수여단장, 20사단장,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향토사단장이자 공격부대였던 정웅 31사단장은 배제됐다. 「전교사 방문결과 보고」(보안사, 「83-1980-95」, 266쪽 인용).

조기 평정책)의 장단점을²¹⁾ 검토하여 제3안, 즉 조기 평정안을 상신했다.²²⁾ 이리하여 유희 진압이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무력 진압은 언제 실행하느냐만 남았을 뿐이었다.

이와 함께 강경 진압방침의 관철을 위해 22일 전격적인 인사 조치가 있었다.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으로 윤희정이 물러나고 소준열이 들어섰다. 그리고 교도소 방호임무는 31사단에서 공수 7여단으로 넘어갔다.

봉쇄작전 기간 동안 광주의 505보안대에서도 유의할 움직임이 있었다. 505는 서울 보안사령부와 더불어 군대의 이동과 군 지휘관의 통제, 감청 등을 실행했던 정보부대로서, 소속 군인들이 편의복을 입고 도청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때 505 책임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미덥지 못하게 여긴 서울 보안사령부가 감독관으로 1군단 보안부대장인 홍성률을 내려 보냈는데, 그의 행적이 봉쇄작전 과정에서 어떤 것이었는가 암시되는 기록이 남아 있다.

[검사가 이재우에게] 당시 최(예섭준장) 처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505보안부대의 상황관단 능력이 부족하니 직접 내려가 현지 상황을 판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간 것인데 알고 있었나요? [답변생략] 1980년 5월 20일 역시 보안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1군단 보안부대장이던 홍성률이 광주로 내려갔는데 만나 보았는가요? - 예, 5월 20일 08시 00분경 저희 부대로 찾아온 홍성률 대령을 만났는데 그가 '사령부 지시로 광주로 들어가 뭘 좀 알아봐어겠다'고 해 제가 당사까지의 시위상황과 과격하진압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요지의 말을 해주었더니 약1시간 30분후 혼자서 민간인 복장으로 광주시내로 들어간다고 출발했습니다. 22시경 상무대로 돌아올 때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그후 알고보니 시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잠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²³⁾

홍성률 대령이 민간복을 입고 시내로 나간 것은 도청앞 발포가 있기 전 날이었다. 그의 특명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가 광주에 체류하는 동안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고, 도청내에서 항쟁 지도부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독침사건과 같은 심리전이 주도면밀하게 치러진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21) 제1안은 평화적 방안이나 성공의문, 양민학살, 장기간 소요 등이 단점으로 제시됐다. 제2안은 비교적 적은 희생을 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폭도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 주민조직으로 총알받이(방패화), 시내 방어체제 강화, 타 지역으로의 파급 우려, 시민의 불평 고조, 군인 및 공무원 가족을 앞세워 조직적 작전 방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제3안은 폭도들의 의지 분쇄, 파급효과 예방, 주민조기 해방으로 피해감소가 장점이나 군민폭도의 희생(어느 정도 각오), 마스크에 의한 악용 우려, 평정 후 후유증 예측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22) 「조찬회의 자료」(보안사, 「383-1980-95」, 228~230쪽 인용).

23) 李在干 진술조서 (徐義男 대질) 1996년 1월 4일 서울지방검찰청.

2. 광주 유험진압 과정에서 봉쇄작전의 위치

전투교육사령부는 『충정작전보고서』에서 진압에 이르는 10일간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획했다.

- 1단계: 5.17이전. 경찰 데모진압.
- 2단계: 5.18~5.21 (4일간). 군 병력으로 시위대 해산 및 진압.
- 3단계: 5.22~5.23 (2일간). 주요도로 봉쇄 및 지점확보.
- 4단계: 5.25~5.26 (2일간).
- 5단계: 5.27. 충정작전 수행.

이 가운데 광주 봉쇄와 연관된 것이 3단계이다.²⁴⁾ 이 단계는 봉쇄지점을 확보하고 중요 시설을 고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광주를 철저히 외부와 고립시키는 작전을 수행하는 시기였다. 가장 많은 병력을 내고 있는 것은 20사단이다.²⁵⁾ 그렇다고 과잉진압으로 도마에 오른 특전사가 철수한 게 아니었으며, 충정작전의 마지막 단계까지 남아있었다. 그리고 비고란에서 “무장헬기 장흥교도소 정찰”이나 “500MD 3대 무장화 건의”라는 말이 눈길을 끄는데, UH-1H나 500MD는 모두 다연발 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는 헬기이다. 한때 헬기 기총소사는 논란거리 중의 하나였으나, 조비오 신부의 증언과 아놀드 피터슨의 촬영 슬라이드로 논란은 해소되었다.²⁶⁾ 다른 증언도 있다.

송정리에서도 헬기 기총소사: “21일 남평으로 가서 무기를 탈취해 22일 새벽 광주로 들어오던 중 효천에서 계엄군의 총격을 받고 되돌아갔다. 3일간을 광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시위대들과 함께 남평, 나주 등지에서 보냈다. 24일 송정리를 거쳐서 가기로 합의하고 송정리 비행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계엄군과 우리측 대표가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나는 차에서 내려 주변 마을로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조그만 냇가를 따라 걷고 있을 때 헬기가 나타나 나를 향해 총을 쏘아댔다. 나는 그때까지도 총을 메고 탄띠를 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헬기는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 총을 쏘으나 다행히 적중시키지는 못했다.”²⁷⁾

24) 여기 제시한 표에서 동원 병력과 항공기는 위 『12·12, 5·17, 5·18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한편, 박만규 교수는 이 계획이 애초에 설계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 보았다.

25) 동원 병력란에 나오는 학교는 전투교육사령부 소속 보병·포병·기갑·화학 등 4개 학교를 말한다.

26) 국회청문회 속기록에는 다음 기사가 있어 헬기의 무장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 5.22. 11:25~13:00 1항공: AH-1J 2대, 500MD 1대 무장사수 탑승 2명, 20미터 기관총 1정. 목적 폭동진압. ○ 5.22. 15:25 수경사방공 상황실: 1항공여단장 500MD 무장 항공기 4대, AH-1J 2대를 2군에 지원 소요사태 진압. 기 지원된 500MD 가스살포기 4대 복귀.

27) 이정섭의 증언,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p..

단계	작전 내용	동원 병력	동원 항공기	비고
제3단계 5.22~5.23	1. 주요도로 봉쇄 및 지점 확보 (전주,목포,화순,담양) 2. 교도소 고수 및 병참선 확보	20사 146/2863 31사 150/1430 특전사 267/1768 학교(3) 78/1971 계 641/8032	UH-1H 10대 500MD 7대 O-15대 코브라 2대	5.22. 11:22 전교사-무장헬기 장흥교도소 정찰 11:30. 500MD 3대 무장화 건의
제4단계 5.24~5.26	1. 2단계작전 계속 2. 수습대책위원회와 협상 3. 적극적인 선무활동	20사 146/2863 31사 150/1140 특전사 267/1768 학교(3) 78/1971 계 641/7742	UH-1H 10대 500MD 7대 O-15대	

[표3] 전투교육사령부의 『충정작전보고서』에 설정된 5단계 중의 제3, 4단계

전투교육사령부에서 작성한 작전일지는 22일의 봉쇄작전을 이렇게 언급하였다.

- 5.22. 11:00.
- 군사령부, 도로봉쇄 지점간 간격 차단 지시.
부대별 책임 지역 할당.
협조점 부여 완전 차단.
광주시 외곽으로 탈출 방지.
- 군사령부, 해안경계 태세 강화 (훈련단: 해안 경계 지도).

봉쇄는 지역별로 할당된 부대가 실행하였으며, 도로를 위주로 지점을 차단하는 데에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협조점이란 각 부대별로 할당된 지점을 잇는 포위망을 형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봉쇄작전은 광주 일원을 군대가 완전히 에워쌌으로써 폭도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뿐 아니라 물자의 반입을 끊어 항쟁의 토대를 붕괴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은 더 음험한 목표는 봉쇄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외부에서 일체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위 작전일지에서 또 한가지 눈에 띄는 항목은 해안경계 강화이다.²⁸⁾ 해안경계는 지역

28) 『계엄사 상황일지』에서도 해안경계 강화령이 발견된다. “5.23 12:35 ○전교사, 해안경계 강화 지시: 훈련단장”.

주둔 향토사단이 맡았는데 당시 해안 초소에 근무한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선박을 통한 거수자의 침투를 우려하여 매일 해안 모래를 빗자루로 쓸고 발자국이 찍혀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광주에서 항쟁이 있었던 열흘 간 전남북의 서해안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해안에 대공 경계망이 펼쳐 있었다.²⁹⁾

봉쇄작전이 시행된 첫날 주목되는 사항들이 있다.

- 5.22. 11:03. 군사령부, 고속도로 봉쇄. (확보 지시). (전교사 작전일지)
- 5.22. 13:00 11여단 외곽지역 봉쇄 작전 및 3여단 교도소 방호 작전 임무 수행. (특전사 전투상보)

위의 첫 기사는 고속도로의 봉쇄가 이루어진 시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광주로 오는 차들은 철저한 검문을 받게 되고 이날 11시 이후 고속도로는 장성에서부터 끊기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교도소 방호가 기왕의 향토사단에서 3공수여단으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주요 보안시설의 경계가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휘체통이 훨씬 강경해진 사실을 전한다.

3. 미국이 취한 태도

도청 앞 발포 다음날 5월 22일, 백악관에서 고위 회담³⁰⁾이 열렸다. 이 회의에 누구누구가 참석했고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는 그동안 비밀이었으나 이 방면을 집요하게 추적

29) 지만원이 제기한 '북한 특수부대의 광주 활약설'은 그들의 침투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함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군이 수송기를 타고 공중 낙하하지 않았거나 육로의 봉쇄망을 뚫고 잠입하지 않았다면 해안을 통해 침투했을 것인데 이것 역시 거의 봉쇄수준으로 해안경계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이다. 그런 규모의 병력이 해안을 통해 상륙했다면 광주에 이르는 동안 어떤 식으로건 통신을 했을 것인데 국군이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리 없다. 공중에 한반도 전역을 손금 보듯이 24시간 내내 감시하는 조기경보기가 2대나 떠 있고, 전 해안선에 철통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북한군 600명이 투명인간처럼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군사작전이 실시되면 교신 회수는 증가한다. 600명의 상륙은 대대급이 벌이는 작전이다. 도청진압 작전을 펴기 전, 보안사의 515보안부대는 감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월 26일 19:00에 광주지역으로 이동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조찬회의 자료」보안사, 「383-1980-95」, 228~230쪽).

30) 1979년 박정희의 죽음 뒤, 미국 대통령 Carter가 극소수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행정부 내에 꾸려 체로키 Cherokee 팀이라고 명명하고 한국사태를 주시하였다. 이 팀이 인가된 사람 외에는 열람권이 없다는 뜻의 NODIS라는 특별 암호명으로 서울주재 미국대사관과 비밀교신을 하면서 격동하는 한국 정세에 대응하였다. 체로키 팀에는 카터 대통령,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 에드먼드 머스키 국무장관(80년 5월초 취임), 크리스토퍼 국무부 차관, 리처드 홀부르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조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안보보좌관,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 스탠즈필드 터너 중앙정보국 국장, 도널드 그레그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책임자,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 등이 소속되었다. 이 팀은 5월 21일 계엄군의 도청앞 집단발포 뒤에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무장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였으며 한미 연합사 병력의 광주이동에 관해서도 승인을 한 사실이 비밀 해제된 문건에서 드러났다.

한 팀 사록 기자에 의해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³¹⁾ 미국 관리들은 한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민군의 등장과 향후 예상되는 계엄군의 무력진압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계엄군의 위치 이동에 있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집단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북한의 남침보다도 미국의 반대였다. 군대 이동과 무력진압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³²⁾

미국은 나중에 대한민국 국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특전단의 잔혹한 과잉진압을 비난했으나, 실제로는 5월 22일에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계엄군의 이후 행동을 두둔하고 묵인하기로 결정했다. 위کم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그의 작전지휘권 아래 있는 한국군이 시위진압을 위해 동원되는 것을 승인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조기경보기 2대와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 중인 항공모함 코럴시Coral Sea호를 한국 근해에 긴급 출동하도록 조치했다. 이런 조치는 북한에 대해서는 경고를, 전두환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는 신호였다.³³⁾

4. 봉쇄작전과 양민학살

국방부 과거사조사위원회는 시위대가 아닌 비무장 민간인들조차 계엄군의 경계지역을 통과하려다 화를 입은 사례를 조사하였다.³⁴⁾ 2007 국방부 조사보고서에 나온 사례의 일부를 뽑아 보겠다.

봉쇄작전 도중 광주교도소(3공수여단), 국군통합병원(20사단), 지원동·주남마을(11공

31) 팀 사록은 이 공로로 인해 다음 주인 5월 21일 광주시가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을 받으러 광주에 온다. 그가 미국정부로부터 입수한 광주관련 자료의 주요 내용은 wang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황석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영문판)의 권말에 Kwangu Diary: The view from Washington 이란 소논문으로 정리되었으며, 이 내용이 1996년 3월 시사주간지「시사저널」에 번역 소개됨으로써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32) 5월 23일 오전 계엄사령관 이희성, 참모차장 황영시, 2군사령관 진중채, 작전참모부장 김재명이 참석한 계엄사령관실의 회의에서 도청진압작전이 논의되었다. 뒷날 국회청문회에 출두한 이희성은 당시 고려된 진압작전이 27일로 늦춰진 것은 미국과의 협의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33) 한국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공식 입장: ○토머스 로스 미국방성 대변인은 존 위کم 유엔군 및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그의 작전지휘권 아래 있는 일부 한국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했으며, 미국은 대한 군사원조의 축소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무성도 성명을 내어, 광주사태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고, 당사자(계엄군과 시위대)들의 자제와 대화를 희망한다면서, 외세 오판에 대해서는 공약 따라 강력 대처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1980.5.22.

34) 10:00경 광주교도소 앞 고속도로 진입로를 봉쇄하고 있던 3공수여단 병력은, 광주에서 트럭으로 채소장사를 하던 김성수가 가족과 함께 진도의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통과를 거절당하여 광주로 되돌아가려 하자, 뒤에서 총격을 가하여 처 김춘아(여, 43세)는 사망하고 딸 김래향(여, 5세)는 하반신마비가 되었다. 국방부, 위 『보고서』, p.95

수여단 및 7공수여단), 송암동(11공수여단), 해남(31사단), 광주-목포간 도로(20사단) 등지에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발생했다.

5월 23일 09:00경 11공수여단은 광주-화순간 국도변에서 매복하던 중 녹동마을 입구 화약고 앞 도로변에서 미니버스를 총격하여 화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고영자(여, 22세) 등 11명을 사망하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에게까지 총격을 가하여 유춘학(남, 고교생)에게 흉부 관통상을 입혔다.³⁵⁾

또, 14:00경 11공수여단 62대대는 주남마을 부근 광주-화순간 국도를 차단하던 중 광주 방면에서 시위대와 주민을 태우고 화순방향으로 진행하던 미니버스를 정차시키려다가, 운전사가 정차하면 죽을 것 같아 계속 달리자, 총격을 가해 타이어를 터뜨려 버스를 세우고 집중사격하였다. 탑승자들이 손수건을 흔들며 쏘지 말라고 애원하였으나 공수부대원들은 사격을 계속하여 박현숙(여, 16세) 등 15명을 살상하고, 부상한 남자 2명을 즉결 총살하였다. 공수부대원들은 시신마저 도로변에 거적으로 덮어방치하고, 인근 산에 암매장하였다.

해남에 주둔하고 있던 31사단 93연대 2대대는 해남-완도간 국도변의 부대 정문 부근 우슬재와 북평리에 매복하다가, 5월 23일 05:30경과 10:00경 두 차례에 걸쳐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여 그 과정에서 박영철(남, 27세) 등 20여명을 사망하게 하고, 이 중 수 명의 시체를 부대 내에 가매장하였다.

또한, 앞서 든 교도소 부근에서도 군대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있었다. 이미 말했듯이 교도소 부근은 담양·순천 방면으로 나가는 길목이자 고속도로를 타려는 차량들이 거치는 나들목이었다. 가족과 함께 교외로 나가려던 사람들조차도 계엄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23일에도 양민의 희생이 일어났다.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에서 편찬한 증언집에도 봉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양민사살이 여러 건 나와 있다.

35) 이 날의 “광주시내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었기 때문에 집배원이었던 나는 23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지난밤 끊이지 않고 계속된 총성에 불안을 느낀 나는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오전에 집을 정리하여 오후 3,4시경 화순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들성들성 걷고 있었다. 우리가 논길을 따라 녹동마을(지원동)을 막 지날 때였다. 난데없는 총소리가 콩뚱뚱이 요란했다. 짹째 주위를 살펴보니 광주-화순간 도로변에서 계엄군들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쏘고 있었다. 1개 소대 병력 정도가 2줄로 서서 앞줄은 ‘엎드려 썩’, 뒷줄은 ‘서서썩’ 자세로 갈겨대고 있었다. 나는 주변 민가를 향해 정신없이 뛰었다. 총알이 내 주위를 핑핑 스쳐갔다. 한참을 뛰어가다 신발이 벗겨지자 나는 그 자리에 섰다. 아니, 내 신발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야 나는 위아래를 살펴 봤다. 오른쪽과 왼쪽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이미 옷을 빨갱게 적셔냈다. 언제 총에 맞았는지조차 모르는 사이 양쪽 대퇴부를 관통했던 것이다.” 김동식 증언, 앞 『현대사사료전집』, p..

○ 화정동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총격.

“5월 22일, 오후 5시경 상무대 쪽에서 탱크 1대를 앞세운 계엄군이 신학대학 부근으로 왔다. 일부는 신학대학 근처 숲에 잠복하고, 일부는 도로 양편에 늘어서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집에서 그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신학대학 부근에 잠복해 있던 계엄군들이 인근 주민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다. 내 아들도 그때 총에 맞아 죽었다.”³⁶⁾

○ 5.22 08:20 외곽에 배치된 계엄군이 시민 탑승 차량에 발포.

“시외지역에서 시외버스 정규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우리 회사 버스를 통제하기 위해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8시경 광주를 출발했다. 광-목간 도로를 이용해서 시외로 빠져나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보니까 도로 양편 눈에 대여섯 대의 자동차가 처박혀 있었다. 사람은 없었으나 여기저기에서 핏자국이 보였다. 우리가 송암동 연탄공장 앞을 지날 때 갑자기 드르륵, 드르륵 총소리가 들렸다. 매복해 있던 30-40명의 계엄군이 두 차례에 걸쳐 집중사격을 퍼부어 동료 1명은 죽고, 우리는 총에 맞아 부상당했다.”³⁷⁾

무장한 시위대도 아니고, 무슨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 일반 시민에게 이같은 무차별 총탄세례가 있었다.

IV. 결론:

광주 항쟁의 과정에서 봉쇄작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봉쇄작전은 상이한 관점에서 평가된다. 첫째로 계엄군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전두환의 계엄군은 18일 0시를 기해 계엄 확대조치를 공포하면서 공수부대를 보내 무자비한 초기제압에 의한 시위의 조기 종결을 기도했다. 그러나 백주대로에서의 구타와 살해는 다중의 공분을 격발시키면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는 결국 시민의 무장을 초래하였다. 계엄군은 즉시 시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 일원의 봉쇄작전을 실행하고, 무장을 강화하여 LMG·화염방사기·수류탄·크레모아 같은 대량 살상무기나 (다연발 기관포를 장착한) 중무장 헬기로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계엄군은 지휘계통을 교체하여 강경 노선의 관철을 표명하였다. 계엄분소장

36) 함병남 증언.

37) 해정구 증언.

이 소준열로 교체되고, 교도소 방호병력이 3공수여단으로 교체되었으며, 군대의 지휘계통을 단속하고 심리전을 주도하는 광주지역 505보안대에 감독관이 파견되었다. 봉쇄작전은 강경한 유혈진압을 예고하는 것으로, 단지 '폭도'의 도주나 외부인의 침투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봉쇄선 안에 든 주민의 무차별 학살을 무릅쓴 군사행동이었다. 전두환 집단은 군대에 의한 학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통신 전화선을 끊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숨기려 했다.

전투교육사령부의 『충정작전보고서』가 항쟁 열흘 기간을 구획한 5단계에서 3단계는 봉쇄작전을, 4단계는 분열작전을 실행한 시기로서, 계엄군의 압도적 화력에 의한 27일 새벽의 유혈진압 예비단계였다. 봉쇄작전은 무장봉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전두환 집단이 고안, 실행한 것이라면, 분열작전은 도청에 들어선 무장 항쟁파의 입지를 위축시키기 위해 독침사건을 조작하고 고첩 활동설을 흘림으로써 지도부를 이간 책동한 심리전을 말한다.

둘째는 시민군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봉쇄는 시위대의 압박이라는 군사적 관점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취한 협상의 배제와 유혈진압의 암시는 시민군의 무조건 투항 대신 최후 항쟁을 귀결했다. 이것이 새로운 평가의 단초이다. 봉쇄는 시민군의 봉기를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수립된 것이지만, 오히려 위기 의식을 조장하여 항쟁 지도부를 단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항쟁파는 전두환 집단이 헬기·폭약·중화기를 동원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대량 학살이 예고되어 있다고 느꼈다. 최후 저항, 옥쇄의 결심은 그런 배경 위에 굳어질 수 있었다.

전두환은 항쟁 지도자의 시신을 밟고 권좌에 오르면서 집권기간 내내 정통성 시비에 시달려야 했다. 그가 주도한 군사작전이 인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양민학살과 무차별 사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지만, 봉쇄의 실상을 덮어두고 광주에 북한군이 흔적도 없이 투명인간처럼 나타나 계엄군과 교전하고 그들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사법적 제재의 대상이다.

참고자료

국방부,『12·12, 5·17, 5·18 진상조사보고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7.24.)

편찬위원회,『12·12, 5·18 비록』, 재향군인회(1997).

박만규,「신군부의 광주항쟁과 미국문제」『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 518연구소(2003).

조갑제,『조갑제의 광주사태』, 조갑제닷컴(2013).

지만원,『솔로몬 앞에선 5·18』, 도서출판시스템(2010).

그 외 군대자료:

『상황일지』, 『전투상보』, 『계엄상황일지』, 『517충정병력출동』 등

무기: E38 조기경보기 2대

M60, M203, 500MD, AH-1J, UH-1H, Coral Sea, C-130.

광주-송정간 바리케이드



